

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 2011

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목 차

I. 서 론	1
1.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도입	3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5
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7
4.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05~2009) 평가	8
5.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방안 연구	11
6.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10년) 결과	14
II.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17
1.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방향	19
2.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21
III.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47
1.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기본방향	49
2.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구성	49
3.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52

IV.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55
영역 1 보육환경	57
영역 2 운영관리	90
영역 3 보육과정	123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162
영역 5 건강과 영양	188
영역 6 안 전	224
V. 부 록	249
[부록 1] 자체점검보고서 예시(장애아전담)	251
[부록 2]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연락처	276

I. 서론

1.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도입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4.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05~2009) 평가
5.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방안 연구
6.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10) 결과



서론

1.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도입

1)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추진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으며, 특히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거 양적 확충 위주의 국가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3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2005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보육의 국가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예산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중앙정부 예산만 2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육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은 수요자,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2009년까지 제1차 시행이 완료되어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이 시작되었다. 1차 시행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인증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평가인증 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참여과정 중 교사나 부모의 협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도 인증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인증시설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영역에서 서비스 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평가인증제도의 시행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소정의 목적을 거두고 있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평가에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인 아이사랑 플랜의 보육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전인적으로 성장·발달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부모는 아이 기르는 어려움보다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크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3대 전략과 6대 추진과제¹⁾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로 평가인증제도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이러한 보육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때 제도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될 것이다. 이제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써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평가인증의 시행은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를 둔 부모는 물론, 국민 누구나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1) 3대 전략은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확대, 신뢰회복이며, 6대 추진과제는 부모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확립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1) 보육의 질

보육의 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으며, 대개 구조적인 질, 과정적인 질, 서비스의 질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Donabedian, 1980; Munton, Mooney, & Rowland, 1995). 첫 번째, 구조적인 질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육의 질로써, 교사 대 아동의 비율, 학급의 크기, 교사의 교육 및 훈련수준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학급의 크기 등은 보육예산 변화에 따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보육의 과정적 질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과정적인 질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교사와 아동 간·부모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 등을 의미한다(McCartney, 2004; Whitebook, Howes, & Phillips, 1990). 보육시설의 과정적 질은 아동의 학습준비도, 인지, 학습, 사회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양육자, 즉 보육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은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기능에 주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로 큰 것으로 인식되어 아동의 보육경험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Vandell, 2004). 셋째, 서비스로서의 질인데, 이는 새롭게 보육의 질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다. 즉, 부모를 고객으로 보고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육시설의 주 이용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서비스로서의 보육의 질을 평가하여 시설의 질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육서비스를 측정할 때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 시설의 배치 및 분포, 시설의 이용가능성, 운영시간, 부모의 자유로운 시설 선택권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념의 질적 수준 적용이 미비하나 향후 저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의 학력과 경력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 뿐 아니라 발달에 적합한 활동, 따뜻하고 민감한 보육, 교사의 행동 등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과정적 변인 및 서비스로서의 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된다. 또한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육의 질적 수준과 아동발달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아동발달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준다. 보육시설은 가정과는 구분되지만 아동이 오랜 시간 생활하며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써, 보육시설의 질은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하향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양질의 보육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보육의 질과 관련된 아동발달의 결과로는 사회성, 창의성, 놀이, 문제해결력, 자아통제력, 언어 및 인지 발달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언어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urchinal et al., 2000), 양질의 취학 전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성과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ney, 198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또한

아동의 학습지향적 특성과 학습준비도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후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liam & Zigler, 2004). 일반적으로 우수한 취학전 프로그램은 모든 계층의 영유아에게 이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Karoly & Bigelow, 2005), 영유아기의 건전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orney, Mitchell, & Warner, 2006).

국내에서도 보육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은 아동의 놀이행동(강진아, 1998), 사회적 행동(최지현·박혜원, 2000)과 사회적 능력(전춘애·이미숙, 2002), 적응행동(현온강·태진, 2000)과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수한 보육의 질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경험을 하는 경우 더 높은 보육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이렇게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좋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을 근거로 보육시설 스스로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보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국가 미래 인적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2년여에 걸쳐 개발, 준비되었고, 2005년 시범운영 실시 후 2006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확대 실시되어, 2009년까지 1차 시행시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제2차 시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2002. 3)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002. 6·9·12)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관련 연구용역 실시(2002. 4~12)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2004. 1)
- 평가인증업무 한국여성개발원 위탁(2004. 10)
-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2005. 1~12)
- 평가인증업무 육아정책개발센터 위탁(2006. 1)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실시(2006. 1~2008. 9)
- 보육시설 평가인증 개선방안 시행(2008. 10~2010. 1)
 - 자체점검기간(4~5개월 → 3~4개월)을 단축, 전체 소요기간 6~7개월로 축소
 - 평가인증지표 유형구분의 기준을 21인에서 40인으로 변경
-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진행(2009. 3~2009. 12)
- 평가인증업무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위탁(2010. 1~)
-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10. 2~)
- 보육시설 평가인증 재인증 시행(2010. 8~)
 - 자체점검기간(1개월), 전체 소요기간 4개월 진행

4.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05~2009) 평가

1)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도 이후 2009년까지의 1차 시행시기를 종료한 결과, 전국 보육시설 35,550개소(2009. 12월 기준)중 81.8%에 해당하는 29,084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그 중 참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 및 일부 포기탈락시설을 제외하고 전체 보육시설의 57.4%인 20,402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인증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인 보육시설의 94.3%(1,470개소 중 1,386개소)가 인증에 통과하였고, 국공립시설 87.1%(1,917개소 중 1,670개소), 민간시설 58.4%(14,368개소 중 8,391개소), 직장시설 54.9%(370개소 중 203개소), 가정시설 50.3%(17,359개소 중 8,730개소), 부모협동시설 33.3%(66개소 중 22개소)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및 강원이 전체 대비 84.0%,

80.2%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가 3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5년 평가인증 실시 이후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인식, 효과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시설의 88.8%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4.0%가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한 교사의 변화로는 1순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2순위 '직무에 대한 애정과 만족도 향상'을 꼽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영유아를 위한 환경이 개선된 점'과 '교사 자신을 계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꼽아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에 만족(93.0%)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에 효과적(96.0%)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참여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2)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분석

1차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증시설의 평균점수는 87.6점으로 인증통과 기준 점수 73.33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인증결과에 의하면 인증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시설의 운영형태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87.2점, 39인 이하 보육시설은 87.8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92.8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보육환경, 상호작용 영역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3)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분석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된 인증통과시설과 평가인증 진행 중 시설, 미인증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²⁾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사와 시설장의 자부심과 교사 효능감을 높이며 아동모집 등 시설 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를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 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인증 시설들에 비하여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들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인증은 시설장이나 교사의 자부심 및 교사 효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효능감 역시 인증시설, 평가인증 진행 중인 시설과 미인증 시설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평가인증이 교사의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응답 시설장의 약 40%, 응답 보육교사의 60%가 평가인증 통과가 보육아동 모집 등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설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한 다른 연구³⁾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이전과 참여한 이후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관찰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상승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환경개선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운영형태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평균점수가 사전관찰 75.3점에서 평가인증 시 89.6점으로 향상되었고, 39인 이하 보육시설에서는 78.1점에서 평가인증 시 90.6점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각 지표의 하위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육시설 평가인증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3)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4)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국내연구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는 평가인증 인식과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대략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 가졌던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시각이 평가인증 참여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향은, 2008), 참여시설의 87.8%가 참여 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유희정·김은설·최혜선, 2007). 임난희(2009)는 평가인증 후 교사의 전문성, 교재교구의 질과 양, 실내 공간의 청결 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이혜숙(2008), 김동례·이현경(2008)은 평가인증제도가 직 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참여 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들도 평가인증 후에 어린이 집 활동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이미숙, 2008), 여러 측면에서 평가 인증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질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보육시설 이 상당수 있는 점,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은 향후 평가인증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인증시설의 질적 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방안 연구

보육시설 평가인증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⁴⁾(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평가인증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와 평가 결과에 근거한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추진방안, 중장기 추진방안을 기초로 한 제2차 평가인증 추진방안 제시로 이

4) 연구진 : 서문희, 김은영, 송신영(이상 육아정책개발센터), 김온기, 이원선, 신희연(이상 평가인증사무국), 김명순(연세대학교), 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이완정(인하대학교), 나종혜(한남대학교), 서소정(경희대학교), 이계윤(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루어졌다.

국내외 문헌, 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과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로 제시된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평가인증지표는 공청회, 유관기관 자문회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2010. 2월)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지표를 확정하는데 토대가 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참여대상 확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에서는 시행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상 시설의 안정성이 미흡하고 평정근거의 참고가 되는 기록이 부족한 신규인가 후 1년 미만 보육시설의 진입을 제한하였으나, 이미 지난 5년간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평가인증지표 내용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존의 신규인가 후 1년 미만이라는 참여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2) 평가인증지표의 적절성 보완

먼저 평가인증지표 항목의 영역별 비중 균형을 위하여 40인 이상, 장애아전담 지표의 운영관리 영역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을 통합하고, 전체 문항을 축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유사항목을 통합하고, 달성도 높은 항목의 기준을 다소 상향조정 하였으며, 1차 시행 시 반영하지 못했던 교수법에 관한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다.

둘째 보육대상의 연령 또는 특성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인증 지침서를 기술함에 있어 연령별, 특성별 기술이 필요한 항목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시설로 하여금 지표의 기준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질적 수준 개선을 도모하고,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 항목의 지침을 기술하고,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지표이해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다.

3) 평가인증 과정의 합리적 운영

평가인증 과정의 소요기간을 자체점검 3개월을 포함하여 6개월로 단축하였다. 또한 자체점검보고서 및 현장관찰보고서의 인증결정 시 반영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증의 객관성을 높였으며, 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적사항 준수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하고, 기준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인증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즉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조력, 지원 등을 지자체에서 담당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인증 과정 중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다.

4)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평가인증 과정을 진행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째, 보육시설이 최초 인가 후 운영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전반을 점검하면서 표준보육과정 활용, 체계적인 시설 운영, 법적 사항 준수 등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평가인증 통과 후에도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의 사전 조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증 시설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인증 통과 후 인증시설에 취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증시설이 인증의 질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증의 질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절차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6.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10) 결과

제 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시행된 첫 해인 2010년 평가인증의 시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2010년 평가인증과정은 신규인증과 재인증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신규인증과정은 1기부터 9기까지 총 9기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시설은 총 8,496개소이다. 2010년 12월 현재 (1기~5기), 참여시설 4,166 개소 중 67.2%에 해당하는 2,801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재인증과정은 2010년에 1기가 진행되었고,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인증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1기 재인증에 신청한 보육시설 504개소 중 85.1%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2010년 12월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23,366개소로 인증율은 전체 보육시설 35,550개소(2009. 12월 기준) 대비 65.7%이다. 인증현황을 설립유형별 인증율로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97.0%(1,917개소 중 1,859개소), 법인시설 94.6%(1,470개소 중 1,390개소), 민간시설 64.5%(14,368개소 중 9,263개소), 직장시설 61.9%(370개소 중 229개소), 가정시설 61.1%(17,359개소 중 10,599개소), 부모협동시설 39.4%(66개소 중 26개소)로 나타났다.

2) 제2차 평가인증제도 개선 방안

2010년부터 진행된 제2차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행 평가와 제도 보완을 위해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보육현장에서 제시한 개선사항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인증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다.

평가인증제도 개선 방안으로 신청단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신규인증 신청의 경우 원하는 기수를 선택하여 진행하고, 재인증 신청의 경우 인증시설의 인증유효

기간 만료일에 따라 기수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재인증 일정에 따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재인증 신청을 하는 인증시설의 인증유효기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에 참여하여 발표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관찰시 확인하고 심의에 반영되는 우수사례 및 부적절 사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우수사례 중 실내 공기질 측정은 보육시설의 부담을 감소하고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제외하였으며, 인가공간의 무단전용 확인은 부적절사례에서 삭제하고 기본사항 확인 시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항목과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증결과 인증유보된 시설의 질적 수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도 신규인증 과정과 동일하게 재참여 과정을 신설하였다. 재참여 과정을 통해 보육시설이 질적 수준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1.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방향
2.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II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1.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방향

2011년 2차 평가인증은 2010년 운영되었던 결과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한다.

첫째, 2011년 2차 평가인증은 신규인증과 재인증 과정으로 진행한다.

평가인증 과정의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평가인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신규인증은 기존에 3~4개월 소요되던 자체점검을 3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였다. 재인증은 자체점검을 1개월로 축소하여 전체 소요기간을 총 4개월로 진행하고 자 한다.

둘째, 참여시설의 법적 관련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이는 1차 시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에서 법적 사항 관련 필수항목 확대 필요성, 인증시설의 법적 사항 미준수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보육시설이 지켜야 할 법적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되,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셋째, 1차 시행 결과 인증 결정 시 반영되었던 자체점검 결과, 현장관찰 결과,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에서 자체점검 결과 반영에 대한 타당성 문제, 현장관찰 결과에 대한 반영비율 상향화 등이 지적되었다. 자체점검 결과의 반영은 도입기라는 특성상 시설의 질적 수준 유지 노력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으나,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질적 수준 평정을 위하여 인증결정 시 자체점검 결과 반영 비율을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인증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심의위원회 의견서 등으로 하되, 보다 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인증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점수를 1차 시행에 비해 상향 조정하였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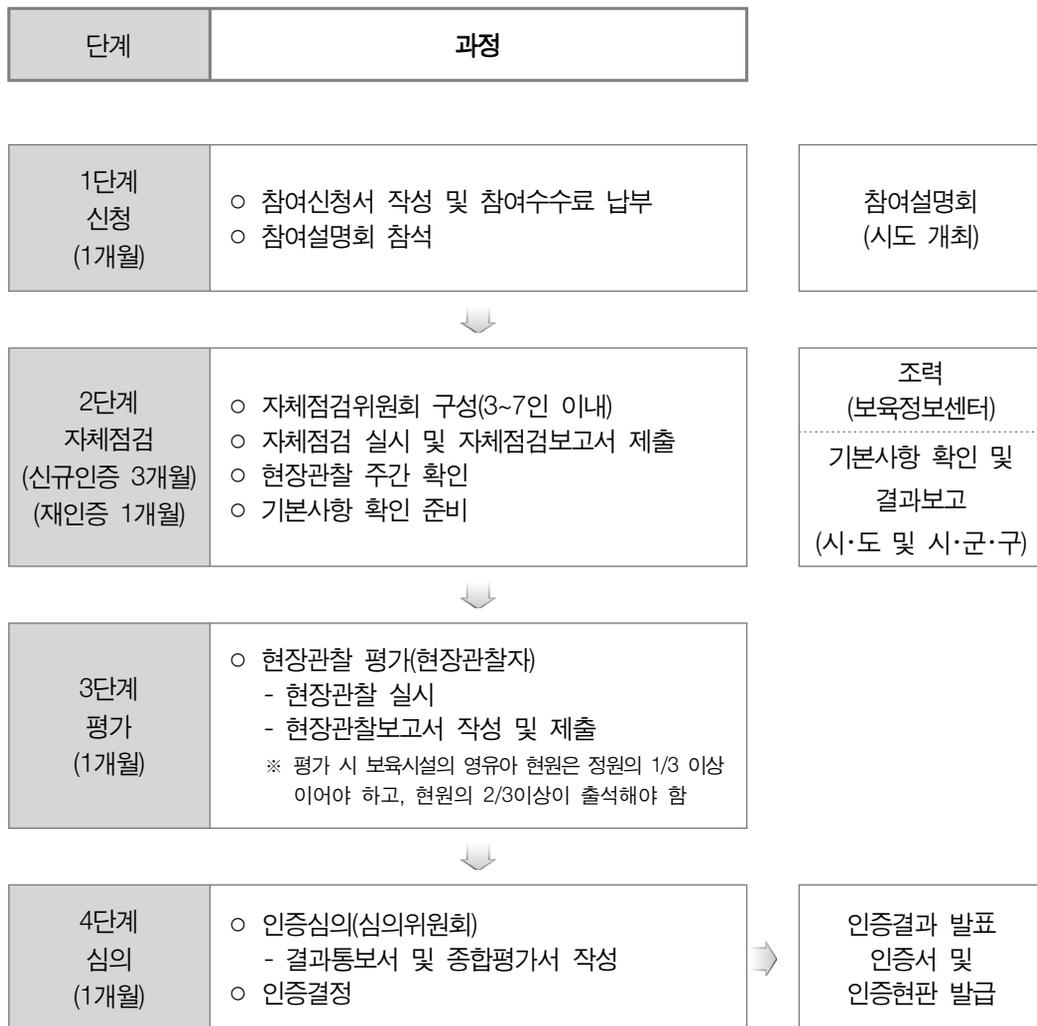
차 시행결과 평가인증 통과점수가 평균 87~90점에 이르고 있으므로, 점진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상향화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다만 1차 평가인증 시행 결과 및 2차 평가인증에서 개선되는 평가인증지표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 점수를 결정하였다.

다섯째, 2차 평가인증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화함으로써 대상 시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즉, 2차 운영시에는 참여시설의 질적 수준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구성하고, 충분히 논의된 결과를 종합평가서에 담도록 하였다.

여섯째, 신규인증과정과 동일하게 재인증 과정에도 재참여과정을 마련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인증결과 인증유보된 시설의 경우 재참여과정에 참여하여 재점검, 재관찰, 재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 자체점검, 평가, 심의 4단계로 진행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그림 II-1>과 같다.



Ⅱ-1 그림 II-1 Ⅱ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1) 1단계 : 신청

신청(신규인증, 재인증) 기간에는 참여시설의 참여신청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진다.

가. 대상시설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2011년에 만료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참여자격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지침 등 보육 관련 법령사항을 준수한 보육시설에 한한다.
- 평가인증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보육시설,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 명령을 이행 완료한 보육시설에 한한다.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해당 종사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제한과 무관함

다. 진행일정

○ 신규인증

- 2011년도 신규인증은 8기로 구분하여 모집, 진행한다.
- 기수별 참여신청은 1월부터 가능하며, 기수별 모집 시설 수는 사업진행 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기수	참여수수료 납부	자체점검	평가	심의	결과발표
1기	1. 19 ~ 1. 26	2월 ~ 4월	5월	6월	7월
2기	2. 21 ~ 2. 25	3월 ~ 5월	6월	7월	8월
3기	3. 21 ~ 3. 28	4월 ~ 6월	7월	8월	9월
4기	4. 20 ~ 4. 27	5월 ~ 7월	8월	9월	10월
5기	5. 20 ~ 5. 27	6월 ~ 8월	9월	10월	11월
6기	6. 21 ~ 6. 28	7월 ~ 9월	10월	11월	12월
7기	7. 18 ~ 7. 25	8월 ~ 10월	11월	12월	'12. 1월
8기	9. 22 ~ 9. 29	10월 ~ 12월	'12. 1월	'12. 2월	'12. 3월

○ 재인증

- 2011년도 재인증은 9기로 구분하여 모집, 진행한다.
-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시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한다('06~'09년 인증시설).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 재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포기)될 경우에도 인증이 종료된다(해당 월 말일 기준).
- 재참여 인증시설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에 따라 기수별로 일정 진행

기수	대상	유효기간	신청 및 참여수수료 납부	자체점검	평가	심의	결과발표
		유효기간 연장					
1기	'06. 1기 (재참여)2006. 1기 유보/불인증	'10. 12월	1.10~1.17	'11. 2월	'11. 3월말 ~4월	'11. 4월	'11. 5월
		'11. 5월					
2기	'06. 2기·3기 (재참여)2006. 2기·3기 유보/불인증	'10. 12월	2.10~2.17	'11. 3월	'11. 4월	'11. 5월	'11. 6월
		'11. 2월					
3기	'06. 4기 (재참여)2006. 4기 유보	'10. 12월	3.10~3.17	'11. 4월	'11. 5월	'11. 6월	'11. 7월
		'11. 7월					
4기	'07. 1기	'10. 12월	4.11~4.18	'11. 5월	'11. 6월	'11. 7월	'11. 8월
		'11. 8월					
5기	'07. 2기 (재참여)2006. 4기 불인증	'11. 2월	5.11~5.18	'11. 6월	'11. 7월	'11. 8월	'11. 9월
		'11. 9월					
6기	'07. 3기 (재참여)2007. 1기 유보 /불인증, 2기 유보	'11. 4월	6.10~6.17	'11. 7월	'11. 8월	'11. 9월	'11. 10월
		'11. 6월					
		'11. 10월					
7기	'07. 4기 (재참여)2007. 2기 불인증/3기 유보	'11. 8월	9.9~9.20	'11. 10월	'11. 11월	'11. 12월	'12. 1월
8기		'12. 2월		'11. 11월	'11. 12월	'12. 1월	'12. 2월
9기	'08. 1기(4개월) (재참여)2007. 3기 불인증	'11. 10월	11.10~11.17	'11. 12월	'12. 1월	'12. 2월	'12. 3월
		'12. 3월					

※ 단, 보육시설의 노후화에 의한 공사 및 리모델링, 소재지 변경, 정원 변경에 따른 운영 형태 변경, 시설장·교사의 출산 발생 등으로 인해 제시된 평가인증 과정(자체점검 기간부터 평가기간까지)에 따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주어진 신청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기수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

라.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된다.
 - 신규인증 신청의 경우 예약신청을 받은 후 기수별 참여 수에 따라 신청을 확정하며,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충하여 진행한다.
 - 재인증을 희망하는 인증시설은 해당 기수별 신청기간 중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참여수수료 :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전담(정원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금액을 적용)
-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됨

가상계좌 입금방법

1.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수수료 입금] 클릭
2. [입금정보 확인] 버튼 클릭(팝업창)
3. 팝업창에서 입금은행, 입금지명, 주민번호, 결재내역통보 e-mail, 연락가능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 클릭
4. 팝업창에서 입금정보(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재) 한국보육진흥원, 입금지명, 입금하실 금액)를 확인
5. [입금정보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
6. [완료] 버튼을 클릭
7. 은행에서 부여받은 계좌번호로 참여수수료 입금

→ 주의)

1. 확인한 입금정보(입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기간)는 1회성 소멸계좌이므로 반드시 해당보육시설의 참여수수료만 입금
2. 반드시 신청기간에만 입금 가능
3. 예금주명은 "(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보임

○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보육시설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될 수 있다.

구 분	자체점검 시작일 전	자체점검 시작일 후 ~ 현장관찰자 파견 이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환 불	100%	50%	0%

- 참여를 중단하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포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관찰자 파견 이전 자체포기는 현장관찰 전일 오후 5시(17시)까지 보육시설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 참여설명회

- 시·도는 평가인증 신청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운영체계와 평가인증지표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육정보센터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은 시·도의 안내에 따라 참여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바. 신청단계에서 지자체 업무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신청시설에 참여 설명회 일정을 안내한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보육시설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평가인증 메뉴)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참여수수료 납부
↓		
시·도	참여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설명회 개최 ○ 참여설명회 일정 시·군·구 안내
↓		
시·군·구	참여설명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설에 참여설명회 참석 안내
↓		
보육시설	참여설명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설명회 참석

Ⅱ-2-2 그림 II-2 Ⅱ 신청단계 지자체 업무흐름도

2) 2단계 : 자체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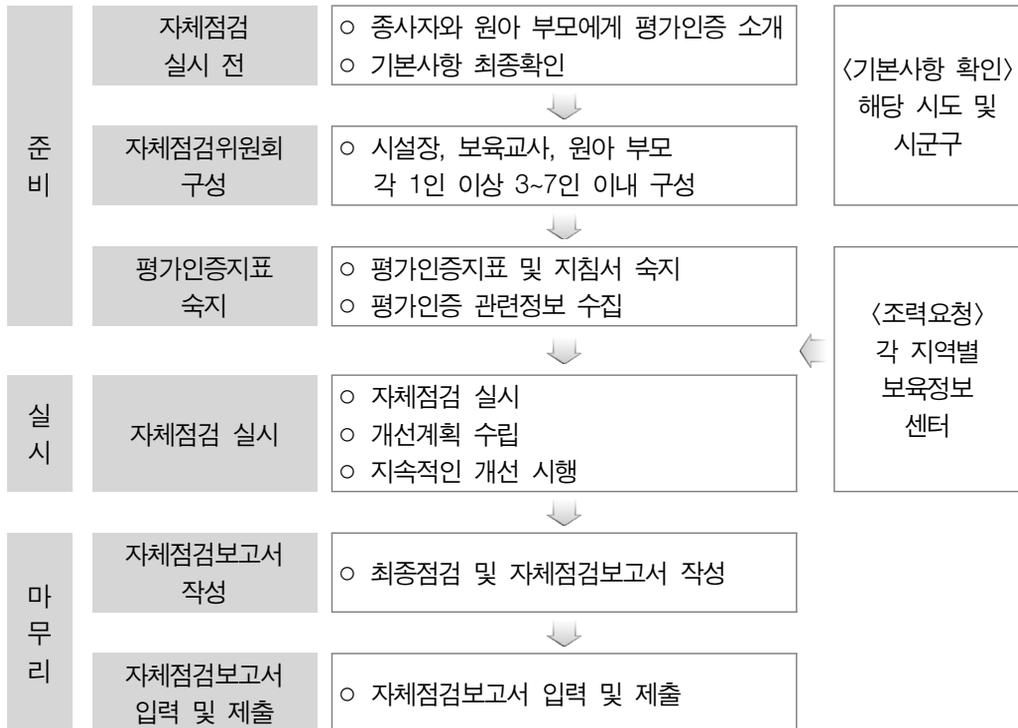
자체점검이란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을 실행해 가는 과정으로, 보육시설의 자체적인 점검·개선 노력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자체점검기간

- 신규인증(3개월)
 - 신청을 마친 보육시설에서는 3개월 동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재인증(1개월)
 - 신청을 마친 보육시설에서는 1개월 동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나. 자체점검 실시 전

- 보육시설의 자체점검은 종사자 및 원아 부모의 참여와 협조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시설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전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원아 부모에게 평가인증 참여의 필요성 및 참여취지에 대하여 안내한다.



┃그림 II-3┃ 자체점검 진행 절차

다.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보육시설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객관적인 자체 점검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체점검 위원회는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한다.

라. 조력 요청

- 보육시설은 평가인증과 관련(지표 및 지침에 관한 이해 등)하여 각 지역 보육정보센터에 조력(상담, 현장방문, 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시·군·구)는 보육시설에서 자체점검 시 지역 보육정보센터의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마.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및 제출

- 자체점검보고서(부록1 참조)를 작성할 때에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기본정보와 항목별 점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영역별로 해당 항목의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그리고 보육시설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 정리하여 기재한다.
- 이때 자체점검보고서 점수의 객관성과 제반 기재사항은 심의점수에 반영되므로 지표에 근거하여 가급적 명확하게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이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자체점검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 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 ①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한다(※ 주의 : 반드시 입력한 자체점검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② 제출완료 전 '미리보기/출력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오류 체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다.
- ③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최종 제출한다.
(※ 주의 : 제출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바.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에 대해 확인이 이루어진다.
- 기본사항 확인 중 필수항목이 미준수 된 시설은 참여가 취소된다.
 - ※ 기본사항 확인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할 수 있다.

□ 필수항목 : 4항목

항 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보육시설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보육시설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써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보육시설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마감일 후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종료, 보조금 반환명령 이행완료 (참여자격 참조)
	미준수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사항이 신청마감일 후 발생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조금 반환명령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참여자격 참조)

□ 기본항목 : 7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양호(1점)	보육시설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흡(0점)	보육시설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양호(1점)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시설('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은 구법 적용
	미흡(0점)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종사자 배치기준	양호(1점)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흡(0점)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	양호(1점)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미흡(0점)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종사자가 있는 경우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1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미흡(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양호(1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보육시설, 대표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민원
	미흡(0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시설, 대표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비상대피 시설 설치	양호(1점)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보육시설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 안내 참조
	미흡(0점)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보육시설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 안내 참조

사. 기본사항 확인 관련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자체점검 기간 동안 자체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필수항목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안내한다.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 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보고한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보육시설	자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점검 ○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		
시·군·구	기본사항 확인 보고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 기간 내 기본사항 확인 및 시·도 보고 ○ 필수항목 미준수 시설에 참여취소 사전통보
↓		
시·도	기본사항 최종 확인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확인결과 최종확인 및 보고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결과확인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확인결과 확인 ○ 필수항목 미준수 시설 참여취소 조치

그림 II-4 기본사항 확인 업무흐름도

3) 3단계 : 평가

자체점검을 마친 보육시설에서 자체점검보고서를 입력하여 제출을 완료하면 현장관찰자가 파견된다. 현장관찰은 현장관찰자가 해당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찰, 보고하는 과정이다.

가. 현장관찰 실시 전 : 현장관찰 주간 통보

- 현장관찰 주간(1주일)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일괄 지정한다.
- 보육시설은 자체점검 기간 완료 3주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현장관찰 주간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은 공지된 현장관찰 주간에 특별한 행사가 없고,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하며, 영유아 정원의 $\frac{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frac{2}{3}$ 이상이 출석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관찰일에 현원이 정원의 $\frac{1}{3}$ 미만이어서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가 취소된다.
- 현장관찰은 해당시설에 지정된 현장관찰 주간 중 현장관찰자가 임의로 정한 하루 동안 실시되며, 현장관찰자는 관찰일 하루 전날 대상시설에 유선(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통보한다(단, 관찰일 전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2일전, 월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공지한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관찰자와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파견한다.

나.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을 부여 받은 현장관찰자가 보육시설 1개소당 2인이 파견되어 1일간 실시된다.
 - 시설도착 예정시간은 08 : 30 ~ 09 : 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 : 30 ~ 17 : 30정도이다.
 - 현장관찰자는 관찰시설의 종사자 및 영유아 채용상황, 시설에서 제시한 하루일

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을 시작한다.

- 현장관찰자는 1인당 1개반을 임의선정하며, 선정한 보육실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한다.
- 현장관찰 종료 시 보육시설의 장은 '현장관찰 보육시설 확인용(부록2 참조)'의 내용을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현장관찰 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며, 보육시설은 원아명단, 실내배치도, 하루일과표, 우수 사례 관련 문서와 평가인증지표 관련 관찰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현장관찰일에는 미임용 종사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타 시설에 임용 중인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관찰시설에 근무하거나 지원활동을 할 수 없다.
- ※ 관찰시설에 미임용 종사자가 있는 경우, 현장관찰자와 시설장은 미임용 종사자가 타 시설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종사자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후 개별 현장관찰보고서 각 1부 및 종합 현장관찰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평가인증 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관찰 관련 자료를 밀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한다.

라. 현장관찰자

- 현장관찰자는 연 1회 모집하고, 당해 연도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관찰자의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관찰자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 현장관찰자 자격 ▣

- ①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②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보육시설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이 있어야 한다.
- ※ 현장관찰자는 당해 연도 참여시설에 근무하고 있거나 조력자,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할 수 없다.

- 현장관찰자 모집 및 선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신청 및 접수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신청기간에 평가인증 시스템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우편송부)한다.
 - 선발 방법 : 총 2차 전형
 - ① 1차 : 서류심사
 - ② 2차 : 1차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및 면접
 - 2차 전형 합격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관찰자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현장관찰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 ※ 현장관찰자 교육 참여 시, 또는 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관찰자 활동을 포기하는 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교육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현장관찰자 활동
 - 현장관찰자는 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한다.
 - 현장관찰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관찰자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관찰자는 활동 종료 후 1년간은 조력자로 활동할 수 없다.
 - 현장관찰자에게 현장관찰 활동기간 및 횟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상 시	비상시
활동	○월 10 ~ 18회 관찰 ○겸직불가(보육시설 재직 등)	○월 3회(내외) 관찰 ○겸직가능

4) 4단계 : 심의

현장관찰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및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인증심의를 진행한다.

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보육정보센터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위촉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심의기준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평가인증 심의위원 자격 ▣

- ① 학계 전문가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 기타 보육관련 전문가
- ②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 종사자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보육교사로서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보육시설 경력(시설장, 보육교사) 총 4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보육시설 경력(시설장, 보육교사) 총 6년 이상인 자
 - ※ 단, 당해 연도에 참여시설로 선정되었거나 현장관찰자로 참여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보육정보센터장
- ③ 보육 담당 공무원

나.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 전문가, 보육정보센터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한다.
-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를 개별 검토한 후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한다.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다. 심의기준

○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의자료	심의기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1.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에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우수사례</th> <th>부적절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td> </tr> </tbody> </table>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라. 인증결정

○ 인증결정은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구 분	반영비율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총 계	100%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점 만점)/75점(100점 만점)이다.

- 인증결과는 인증과 인증유보로 구분

인 증: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인증유보: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이상
인증유보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시설은 재참여 할 수 있음

마. 인증결과 확인안내

-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인증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 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 재인증 재참여를 통해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결정 후 익월 1일부터 2년 8개월간 인증이 유효함

사. 인증서, 참여확인서 및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한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시설장 및 교사에 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 명의의 참여확인서를 발급한다.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인증서, 참여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시·군·구로 배송하고, 해당 시·군·구는 인증시설로 배부한다.

아. 참여취소

○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가 되는 경우

①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휴지신고 또는 폐지된 경우

② 신청마감일 후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종사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참여취소와 무관함

③ 자체점검 시작일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 운영형태(지표유형 변경에 한함)가 변경된 경우

④ 기본사항 확인 시 필수항목이 미준수 된 경우

⑤ 신규인증의 경우,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종사자가 고발 또는 고소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⑦ 재인증 참여과정 중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취소 절차 및 관련 지자체 업무

- ① 시·군·구는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한다.
-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 받은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보고 한다.
-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해당 보육시설에 대해 참여취소 관련 조치를 한다.
- ④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보육시설에 참여취소 사실 통보 등 관련 조치를 한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보육시설	-	○ 참여취소 사유 발생
↓		
시·군·구	참여취소발생 확인 보고	○ 참여취소 사유 확인 후 해당시설에 참여취소 사전통보 및 시·도 보고
↓		
시·도	참여취소 확인 및 보고	○ 참여취소 사유 확인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참여취소 조치	○ 참여취소 사유 확인 후 참여취소 관련조치
↓		
시·도	참여취소 통보	○ 시·군·구에 참여취소 결정 사항 통보
↓		
시·군·구	참여취소 통보	○ 해당 시설에 참여취소 결정 사항 통보

Ⅱ 그림 II-5 Ⅱ 참여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행정처분 범위 및 자격여부

구 분	신청	인증 진행 단계	인증 이후
필수항목 (정원준수,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예결산서 등 회계장부 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위반시 인증 심의위원회 상정불가 → 참여신청 단계부터 재시작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반환명령 이행 완료한 보육시설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반환명령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반환명령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보육시설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보육시설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보육시설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시행일부터 1년 경과후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참여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시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 취소

5) 재참여관리

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시설 중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시설은 재참여 할 수 있다.

※ 재인증 재참여의 경우, 재참여 기간동안 인증이 유효하며, 재참여를 통한 평가인증 통과 이후 유효기간은 2년 8개월임

- 재참여 하고자 하는 인증유보시설은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를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 인증유보시설의 재참여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참여신청 ⇒ 재점검(2개월) ⇒ 재관찰/재심의(1개월 내외) ⇒ 결과통보

- 재점검, 재관찰 및 재심의 과정은 일반참여 방법과 동일하나,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된 유보시설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 점수가 미달된 경우는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 ※ 단, 재참여 시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은 필수항목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는 일반참여 시설과 동일하게 확인한다.
-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된다.

재참여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이상
불 인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6) 평가인증 보육시설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 입력·제출 한다.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다.

인증발표 시기	1 ~ 6월	7 ~ 12월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 1 ~ 6. 15)	하반기 (익년 11. 1 ~ 12. 15)

나.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 인증 관련 각종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평가인증 보육시설 신입 시설장 교육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입 시설장이라 칭함), 신입 시설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입 시설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교체된 시점(임면 보고일 기준)부터 연속하여 개최된 3회차 교육 중 1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다.

연중 교육시기	3월말 ~ 4월초
	9월말 ~ 10월초

- 평가인증시설 ‘보육컨설팅’
 - 보육정보센터는 평가인증보육시설의 질적수준 유지·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시설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2011년도 4,300개소)

다. 인증취소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① 인증 후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지표유형 변경에 한함)
 - ※ 단,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확인방문과정을 통해 인증유지 및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확인방문 취소일자는 결과통보일로 함)

〈확인방문과정〉

- ① 신청: 보육시설은 변경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 방문 신청서와 변경 인가증(앞뒷면)을 FAX로 제출
 - ※ 확인방문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인증이 취소되므로 주의요망
- ② 확인: 확인방문자 2인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로 해당시설에 파견됨
 - 확인내용: 인증 당시의 필수항목 및 지표(보육환경, 건강과 영양, 안전)
- ③ 결정: 인증유지는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인증 당시의 기준점수 적용) 이상일 경우, 인증취소는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에 해당

- ②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시설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회차까지)에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 ③ 인증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종사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와 무관함
- ④ 인증 후 6개월 이상 휴지가 시작되거나 또는 폐지된 경우
- ⑤ 인증 후 대표자 및 시설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육시설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보육시설의 대표자 및 보육종사자가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시설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관찰자가 해당시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시설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이 인증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증취소 절차 및 관련 지자체 업무

- ① 시·군·구는 인증 후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7일 이내에 인증취소 발생사실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한다.
- ② 해당 보육시설은 이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 단, 인증취소 사항 ⑤, ⑥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이 인증취소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보고 한다.

-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보고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인증을 취소하고 관련조치를 한다.
 ※ 인증취소일자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시점을 적용함(단, 2011. 1. 1일부터 적용하며, 2010. 12. 31까지 인증취소 사유 발생시설 중 2010. 12. 31까지 미처리된 보육시설은 인증취소일자를 2011. 1. 1로 일괄처리)
- ⑤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보육시설에 인증취소 통보 등 관련 조치를 한다.
- ⑥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보육시설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하여 처리한다.
- ⑦ 인증취소 사항 ①호 중 소재지 변경 및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확인방문과정을 통해 인증유지 및 인증취소가 결정된다.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보육시설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군·구	인증취소발생 확인 보고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해당시설에 인증취소 사전통보 및 시·도 보고
시·도	인증취소 확인 및 보고	○ 인증취소 사유 확인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취소 조치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인증취소 관련조치
시·도	인증취소 통보	○ 시·군·구에 인증취소 결정 사항 통보
시·군·구	인증취소 통보	○ 해당 시설에 인증취소 결정 사항 통보 ○ 인증서 및 현판 회수

그림 II-6 |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Ⅲ.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1.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구성
3.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III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1차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따르고 있다.

1.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기본방향

- 2차 평가인증에서는 1차 평가인증을 통하여 확보된 보육시설의 보편적 질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사의 상호작용 및 교수법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평가인증지표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보육시설마다 특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표의 세부기준 설정 및 지침서 기술에 있어 연령별 또는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1차 평가인증 시행 이후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및 용어를 새로운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보육현장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지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구성

-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40인 이상 보육시설용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0항목
 - '39인 이하 보육시설용 평가인증지표' 5개 영역 55항목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5항목

- 평가인증지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3단계 기술 평정 척도로 이루어진다.
 - 3점 : '우수한 수준'으로 바람직한 실재를 기술함
 - 2점 :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재를 기술함
 - 1점 : '미흡한 수준'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실재를 기술함
- 각 항목에 대한 3단계 세부 평가기준은 지침서 본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한다.

①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0항목)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1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 (3항목)
영역 2. 운영관리(12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3항목) 나. 보육인력 (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 (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영역 3. 보육과정(14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7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2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2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②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5개 영역 55항목)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1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3항목) 나. 시설의 운영관리 (3항목) 다. 보육인력 (3항목) 라. 가족과의 협력 (2항목)
영역 2. 보육과정(11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4항목) 나. 보육활동과 자료 (7항목)
영역 3.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2항목)
영역 4.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2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5.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③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5항목)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4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4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7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 (3항목)
영역 2. 운영관리(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4항목) 나. 보육인력 (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 (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영역 3. 보육과정(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8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0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1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3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장애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3.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영역		항목
영역 1. 보육환경 (14항목)	보육시설 환경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보육활동 자료	장 1-5. 신체활동 자료
		장 1-6. 언어활동 자료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장 1-8. 예술활동 자료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보육 지원 환경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시설의 운영관리	장 2-1.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 사례회의 및 협력
	보육인력	장 2-5. 종사자의 근로계약
		장 2-6. 시설장과 종사자의 업무수행
		장 2-7. 종사자의 교육
	가족과의 협력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 2-9.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장 2-10.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장 2-1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지역사회와의 협조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영역		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보육활동	장 3-8. 신체활동
		장 3-9. 언어활동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장 3-12. 자연탐구활동
		장 3-13. 예술활동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10항목)	일상적 양육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교사의 상호작용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교수법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영역 5. 건강과 영양 (13항목)	청결과 위생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장 5-3. 놀잇감의 청결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장 5-5.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영역		항목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장 5-7. 장애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질병관리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장 5-11.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급식과 간식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영역 6. 안전 (10항목)	실내외 시설의 안전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영유아의 안전 보호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장 6-8.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IV.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영역 1 보육환경

영역 2 운영관리

영역 3 보육과정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역 6 안전



IV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영양
1

보육환경

보육환경은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기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장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환경이란 물리적, 인적, 시간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리적 환경이라고 해서 단순히 물리적 공간과 공간 내의 활동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 공간과 놀이공간, 장애 영유아의 경험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과 설비로써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해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적극 격려하도록 계획하고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 영유아가 쉬고 싶을 때나 혼자 놀이를 하고 싶을 때 적절한 장소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편 장애 영유아는 구체적인 사물을 스스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놀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의 흥미나 연령, 발달 수준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활동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 장애 영유아 수에 맞추어 충분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활동자료가 충분하다는 의미는 장애 영유아가 각 영역별로 동시에 놀잇감을 갖고 분쟁 없이 놀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을 의미하며, 각 영역에서 놀이하는 장애 영유아 수의 1.5배 내외 정도의 활동자료(놀잇감)를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교사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바탕이 되므로 교사를 지원하는 시설과 참고자료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의 유지와 장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 자료구비,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환경 구비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보육 시설 환경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			-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			-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			-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			-
보육 활동 자료	장 1-5. 신체활동 자료	○			-
	장 1-6. 언어활동 자료	○			-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			-
	장 1-8. 예술활동 자료	○			-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			-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	○			-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	개별성취수준평가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관련 자료 및 기록
보육 지원 환경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			-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			-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	○		-

장 1-1	활동 영역의 배치
3	보육시설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가 적절하다.
2	보육시설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두 영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1	보육시설의 공간이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육시설은 다수의 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장소로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나 장애 유형,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환경은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중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별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이나 흥미, 공간의 크기, 보육시설의 운영 철학에 따라 몇 영역이 가감될 수도 있다.

■ **보육시설의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의 활동 특성에 따라 보육실 공간을 구획하여 한 활동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면 활동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 자료의 영역별 배치 뿐 아니라 시끄러운 놀이와 조용한 놀이, 움직임이 많은 놀이와 움직임이 적은 놀이, 물을 사용하는 놀이와 그렇지 않은 놀이들은 서로 분리하여 놀이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즉, 조용하고 움직임이 적은 놀이(예 : 책읽기, 수활동이나 과학활동 등) 공간을 보육실 한 쪽에 배치하였다면, 그 반대쪽 공간에는 시끄럽고 움직임이 많은 활동영역(예 : 음률활동, 쌓기놀이 영역 등)을 배치하여 서로 방해받지 않고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유형에 따라 뇌병변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조 장비들이 많아 보육실이 협소하거나, 발달장애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각 보육실 내에 모든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전체 보육시설에 걸쳐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개별 발달 수준,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영역을 구성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활동영역이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과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실내 공간의 크기에 맞게 적합한 수의 활동영역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성, 물 사용의 여부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장애 영유아의 활동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공간이 적절한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활동영역이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과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지 못하거나, 한두 영역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 내 활동영역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3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은 있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
1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

장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가정에서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활동하는 등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구성하는 등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 공간은 장애 영유아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교사의 시선이 미치는 곳이어야 한다. 영유아는 종종 좁은 구석이나 열린 장 속, 가구의 틈새에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기를 좋아하지만 이러한 곳은 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된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 휴식 공간의 경계가 되는 교구장의 높이, 조명, 방음 등을 고려하고, 깔개, 쿠션, 소파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하여 장애 영유아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한다.
- 휴식 공간에서 장애 영유아는 하루 일과 중 쌓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놀이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휴식 공간은 가능한 쌓기놀이 영역 등 소음이 많은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배치하고, 장애 영유아가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사의 시선이 미치는 곳에 마련하도록 한다.

- 휴식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언어영역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교사는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영유아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보육실 내에 마련되어 있고, 이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보육실 내에 마련되어 있지만, 이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보육실에 마련된 휴식 공간이 너무 좁거나 장애 영유아가 혼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휴식 공간을 배치한 경우, 쌓기놀이나 역할놀이 영역 등 소음이 있고 활동적인 영역과 인접한 곳에 배치된 경우, 휴식 공간에 깔개만 마련되어 있는 등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되지 않아서 장애 영유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보육실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원장실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장애 영유아를 혼자 쉬게 하는 경우나, 장애 영유아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로 깔개를 깔아 장애 영유아를 쉬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3	옥외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다.
2	옥외놀이터는 없으나 대체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다.
1	대체놀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놀이기구가 3종 미만이다.

장애 영유아는 실외활동을 통해 내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움직임이 큰 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옥구를 충족한다. 보육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대·소근육 활동 및 다양한 실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외놀이터는 보육시설 자체 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를 뜻하며, 옥외놀이터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대체놀이터(옥내놀이터-실내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옥상놀이터/인근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놀이터와 놀이기구를 갖추도록 한다.**

- 놀이터에는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놀이기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두 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1종으로 취급) 등
 -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뽕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헨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 모래놀이기구 :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
 - ※ 기타 놀이도구(권장) : 물놀이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 놀이도구(자동차 등 탈것, 소꿉놀이) 등
- 놀이기구는 대상 연령 또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인근놀이터에 설치된 초등학생용 미끄럼틀은 장애 영유아용 놀이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설치된 놀이기구 주변에는 장애 영유아의 이동과 안전을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에 옥외놀이터가 있고,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장애 영유아의 대·소근육 활동 및 다양한 실외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에 옥외놀이터가 없으나 대체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옥외놀이터의 놀이기구가 3종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대체놀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놀이기구가 3종 미만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대체놀이터에 탈 것 한 종류만 여러 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3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
2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
1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장애 영유아는 다양한 장애의 범주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므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공간과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장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만일 보육시설에서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는 장애 영유아의 불편을 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정 장애 영유아만을 위한 물리적 환경만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장애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장애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 보육실이나 집단활동실은 장애 영유아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숫자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영유아를 위하여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혹은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 유도 블록, 핸드 레일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춘 물리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대·소변기의 높이가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피더시트, 기립보조 책상, 자세교정 의자, 앉아있는 채로 이동이 용이한 의자 등 장애유형에 맞는 기구들과 설비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 (3점)은 시설 및 보육공간의 크기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이동 및 보육에 필요한 보조도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시설 및 보육공간의 크기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의 이동 및 보육에 필요한 보조도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시설 및 보육공간의 크기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매우 협소하고 장애 영유아의 이동 및 보육에 필요한 보조도구가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장 1-5	신체활동 자료
3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대근육활동 자료나 소근육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새로운 운동 기술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는 이러한 활동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신체 자각, 신체 부분의 인식, 공간감각력, 리듬감, 서기, 걷기에 대한 균형감과 안정감,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체력이 증진된다. 또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눈과 손의 협응력, 도구 사용 능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는 장애 영유아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맞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신체활동(대·소근육) 자료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넉넉히 구비하여야 한다.
- 대·소근육활동 자료는 보육실 내, 옥외놀이터, 유희실 등에 비치할 수 있으며, 계절과 실내외 활동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근육활동 자료와 소근육활동 자료를 양쪽 모두 충분하고, 균형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근육활동 자료로는 큰 공, 오르내리는 것이 용이한 낮은 미끄럼틀, 낮은 평균대, 철봉, 시소, 뿔 수 있는 매트, 그네, 자전거, 손수레, 크기와 재질이 다양한 공, 모래와 물놀이용 수로나 삽, 손가락 등의 놀잇감, 바퀴달린 놀잇감 등이 있다.

- 소근육활동 자료로는 딸랑이, 오뎅이, 까꿍 놀잇감, 꼬적거리기 자료, 가위질하기 자료, 밀가루 반죽, 퍼즐, 콩 옮기기, 지퍼 올리기, 모양 맞추어 끼우기, 단추 끼우기, 커다란 너트와 볼트 등과 같이 끼우고 빼는 활동자료 등이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한 경우이다. 즉 대근육활동 자료와 소근육 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여 개별적 욕구나 수준에 맞게 활동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대·소근육 활동자료가 있지만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의 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내에 볼풀장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에 오르고 내리는 큰 기구들이 한두 개 있으나, 장애 영유아가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기의 공이나 구를 수 있는 매트, 탈 수 있는 커다란 놀잇감 등 다양한 자료들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해당한다. 또 소근육 발달을 위한 자료들이 있으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발달 수준이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대근육활동 자료나 소근육활동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장 1-6	언어활동 자료
3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언어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영유아기는 새로운 낱말을 빠르게 습득하고 문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등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굽적거리기에서 비롯되는 초기의 쓰기 시도와 인쇄물이나 그림책 읽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읽기와 쓰기도 빠르게 발달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언어습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언어에 대한 수용 정도,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차를 고려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자료는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 상품화된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장애 영유아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언어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언어활동 자료는 조용하고 밝은 곳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고 자료를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느낌의 카펫을 깔아주고 등받이가 있는 쿠션이나 방석, 낮은 소파, 낮은 탁자나 책상, 책꽂이 등을 준비한다.
- 언어활동 자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자료를 골고루 갖추도록 한다.
- 언어활동 자료는 낮은 교구장에 배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과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들을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지는 않지만 보이는 곳에 둬으로써, 자발적인 요구를 촉진하고 우발적인 언어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 그림책 등의 언어활동 자료는 주제에 맞추어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장애 영유아가 새로운 자료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언어활동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듣기활동 자료로는 잘 들리며 조작이 간단한 카세트 플레이어, 사물이나 동물 등의 특징적 소리를 간단하게 담은 테이프,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 테이프, 헤드폰, 교사나 부모 등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이야기나 운율이 있는 언어놀이나 짧은 노래 테이프 등이 있다.
- 말하기활동 자료로는 장애 영유아가 간단한 소리를 듣고 모방할 수 있는 테이프, 장애 영유아가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를 꾸미거나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촉진시키는 소품, 음성 출력이 되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도구, 낱말 카드, 막대 인형, 테이블 인형, 융판 인형, 자석 인형, 손인형, OHP 그림 등의 자료가 있다.
- 읽기활동 자료로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 다양한 질감의 감각 그림책, 단순한 개념책, 반복적이고 운율이 있는 그림책, 영유아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첩, 동식물 사진첩, 간판 사진, 음식점 표시나 메뉴판 등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어 읽기 자료, 광고나 포스터 자료 등이 있다.
- 쓰기활동 자료로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종이, 굵은 색연필이나 연필, 세모·네모·동그라미 보조선을 따라 그리도록 된 종이, 보조선을 따라 그리도록 장애 영유아의 이름이나 낱말을 쓴 종이 등이 있다. 또 굵적거리기를 위해 커다란 흰 종이를 벽이나 바닥에 준비해주어 장애 영유아가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작은 크기의 그림책, 글이 적고 그림이 선명하며 주제가 단순한 그림책, 형질책, 입으로 물거나 물 속에 넣어도 안전한 비닐책 등이 마련되어 있다. 쓰기 자료로는 짧고 굵은 크기의 연필이나 색연필, 굵적거리기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종이나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언어활동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3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수활동 자료나 과학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감각을 통하여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이로써 수 개념, 일대일 대응, 분류 개념, 측정 능력을 기르고, 과학적 사고나 태도,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주변 환경 탐색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이 좋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자연탐구활동 자료로는 주위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으며, 장애 영유아에게 의미 있고 장애 영유아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여 조작 시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어 장애 영유아에게 선호도가 높은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자연탐구활동 자료는 가능한 조용한 곳에 책상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벌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고 장애 영유아가 관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탁자 등을 구비한다.
- 자연탐구활동 자료는 장애 영유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활동자료를 한번에 모두 제시하는 것보다 장애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생활주제에 맞추어 교체해 주고 보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절, 주제, 장애 영유아의 흥미에 기초하여 다양한 자연물이나 실물을 제시(예 : 열매, 식물, 꽃, 솔방울, 곤충, 조개껍질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하고자 노력한다. 실물자료는 주제와 발달에 적합한 전시용 자료와 더불어 실제로 만져보거나 조작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조개껍데기 등의 실물자료가 깨지거나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 되나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일정기간 동물을 키울 경우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한다.

■ 자연탐구(수, 과학)활동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활동 자료로는 장애 영유아가 직접 만지며 조작할 수 있는 막대나 커다란 단추, 모양이 다른 병뚜껑, 다양한 수 게임자료, 주사위와 판 등이 있다. 일대일 대응, 분류, 비교, 순서 짓기, 측정, 공간과 도형, 규칙성 등의 개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생활주제와 연관된 수학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과학활동 자료로는 동물과 식물, 여러 모양의 돌과 나무껍질, 조개껍질 같은 자연물, 자석, 확대경, 거울, 촉감상자, 소리상자,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 다양한 바퀴 등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다.
- 여러 가지 조작활동 자료(예: 퍼즐, 모양찾아 맞추기, 크기 순으로 고리 끼우기, 색깔 맞추기 등) 및 촉감 상자, 소리상자 등의 탐색활동 자료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자연탐구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한 경우이다. 즉, 수·과학활동 자료가 대부분 실물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활동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실물 자료이며, 장애 영유아의 반복적 사용을 고려하여 견고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수·과학활동 자료가 실물 자료보다는 평면 자료가 대부분인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수활동과 과학활동 중 어느 한 쪽의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또 거의 손으로 조작해 볼 수 없는 전시용 자료(예: 곡물, 곤충, 돌들을 이름과 함께 표구하여 액자로 제시한 자료,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장애 전시한 동물모형 등)만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1-8	예술활동 자료
3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신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소품, 그리기 도구, 생활용품 등의 사물을 탐색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며, 창의성과 미적인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음악, 동작, 미술 등과 같은 표현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음악활동 자료로는 다양한 음색을 경험하고 박자 감각을 익히는데 좋은 리듬악기(예 : 리듬막대, 작은 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등), 실로폰, 멜로디언, 키보드, 피아노 등의 가락악기, 마라카스, 딸랑이, 종과 같은 악기가 있고,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테이프와 카세트 플레이어, 노래 부르기에 필요한 그림악보 등이 있다.
- 동작활동 자료로는 여러 가지 색 보자기, 리본 테이프, 한삼, 부드러운 수건 등과 같은 소품들이 있다. 이러한 동작활동 자료는 장애 영유아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활에 연결된 체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미술활동은 크레파스, 색연필 등 간단한 도구로 굵적거리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되며, 점차 다양한 종이, 도구, 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그림 등의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각종 미술재료(예: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풀, 가위, 색실, 점토, 물감, 붓, 분필,

밀가루 반죽 등), 폐품류(예: 요구르트 병, 우유팩, 병뚜껑, 빈 상자 등),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종이(예: 도화지, 색종이, 잡지, 신문지, 화선지, 골판지 등) 등이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들이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3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1	역할놀이 자료나 쌓기놀이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역할놀이나 쌓기놀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놀이로 표현한다. 또한 영유아의 정서, 사회성 발달이 촉진되고 신체발달, 수학적 개념학습, 과학학습, 사회학습, 언어발달, 조형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장애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되기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장애 영유아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놀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증받은 가정용품이나 폐품, 상품화된 놀잇감, 직접 제작한 놀잇감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영유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한다.**

- 역할놀이 영역은 엄마·아빠 역할하기, 운전하기, 소방서 놀이, 병원 놀이 등 다양한 주제의 상상놀이 및 사회극놀이가 일어나는 영역이므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놀이의 주제가 고정되지 않도록 적절히 자료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역할놀이 자료로는 상품화된 놀잇감 이외에도 가정에서 기증받은 가정용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쌓기놀이에서도 주제를 가지고 놀이가 일어나고, 극화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다양한 블록과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하여 준다. 또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자료는 인접하여 배치하여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역할놀이 자료로는 다양한 신발류, 장신구, 가방류, 모자류, 음식 모형, 인형류, 전화기, 그릇류 등의 소꿉놀이 용품과 의사 가운, 요리사 모자, 남녀 한복, 드레스, 소

방관 복장 등의 옷 종류가 있다.

- 쌓기놀이 자료에는 다양한 종류의 블록류(예 : 종이 블록, 나무 블록, 유닛 블록, 속 빈 블록, 우레탄 블록, 크고 작은 와플 블록 등)와 쌓기놀이를 촉진하는 소품류(예 : 작은 자동차나 표지판, 동물모형 등)가 있다.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따라 가볍고 손에 잘 잡히며, 넘어져도 안전하고 폭신한 우레탄 블록이나 스펀지 블록, 종이벽돌 블록, 형겅으로 감싸져 있는 블록 등이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위에서 제시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 수준(2점)은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역할놀이나 쌓기놀이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
3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2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만,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1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가 거의 없다.

보육시설에는 장애 영유아의 장애를 개선하거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자료들은 장애 영유아의 능력에 적합하고 좌절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즉, 장애 영유아의 연령, 인지, 언어, 신체, 정서 등 전반적인 개별 발달 수준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활동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를 갖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장애유형과 발달 수준에 맞게 활동을 단순화, 구체화시킨 자료들,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수정된 특수교육 활동자료들이 다양하고 양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감각통합교육, 놀이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자료들도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보조도구로는 지체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하게 재활공학적으로 보완된 도구들과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기, 이동하기가 용이하도록 특수 제작된 의자, 휠체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조도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 청각·언어장애 유아를 위하여 의사소통 보조기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시각장애 유아를 위하여 확대 독서기, 문자를 소리로 전환하거나 녹음하여 들려주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규격화된 제품 외에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상용품과

자연물을 활용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자봉지, 잡지, 신문, 사진, 거울, 빈 화장품 용기 및 약병, 종이박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히 있는 경우이다. 즉, 영유아의 장애를 개선하거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특수교육 관련 교재나 교구 등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자료들이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며,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2점)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만,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자료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3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2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돕거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를 다양하게 갖추고 이를 개별화 보육계획안 수립이나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발달평가는 때때로 임상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보육시설에서의 각 발달 영역별 능력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진단은 장애 영유아 개개인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비록 진단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이긴 하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학습내용이나 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의 지체나 지체될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선별과 장애의 종류나 상태, 발달지체의 성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교육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의 구비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 개개인에 대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적절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의 심리/인지/언어/사회성숙도/자폐성 측정 등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다양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 교육진단과 발달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장애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종류가 다양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검사도구 및 자료들을 장애아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받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3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2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1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없고, 자료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보육주제나 계절, 장애 영유아의 흥미나 적응 정도에 따라 자료를 융통성 있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잘 정돈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나 자료실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용 활동자료는 평면 자료보다 입체 자료와 식물 자료가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가 잘 보이도록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한다.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는 장애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구분되어 별도의 창고나 자료실에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 창고나 자료실이 없다면 장애 영유아의 활동이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따로 보관 장소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예 : 교사실, 원장실 등).
- 장애 영유아의 활동이 일어나는 보육실이나 복도, 유희실에는 아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비품과 자료를 활동 영역별, 용도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면 활용하기 쉽다. 모든 비품과 자료는 금방 볼 수 있는 위치에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적어 놓아 한 눈에 내용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별도의 창고나 자료실, 교사실, 원장실, 상담실 등과 같이 장애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보육시설에 별도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장애 영유아의 활동공간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자료를 잘 정리해 놓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료들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3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있고,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2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은 있으나, 별도의 공간은 없다.
1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없다.

장애 영유아 위주로 구성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불편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내에 최소한 교사를 위한 책상이나 개인 소지품을 넣어둘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하고 더 나아가서 교사회의나 교재 준비를 하기 위한 교사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는 교사를 위한 개별 공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도록 한다.

- 보육시설 내에 교사용 책상이나 교사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한다. 이때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책상은 교사 개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교사들이 모여서 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동료 간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사정상 교사실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교사가 일과 후에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공간을 보육시설 안에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 내에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있고, 교사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시설 내에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은 있으나,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 내에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이나 개인용 책상이 없는 경우이다. 즉 별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더라도 교사용 사물함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개인 사물함이나 개인용 책상이 없는 경우, 교사의 개인물건을 교재, 교구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3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한다.
2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1	교사용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과정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장과 교사가 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참고할 전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참고할 전문 자료가 부족하면 교사가 준비하는 활동계획이 진부해지거나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데 머무르기 쉬우며,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사용 참고자료란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서적, 보육활동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자료,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을 위한 참고자료와 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위한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의미하며 전문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용 교재(학습지 등)나 월간 잡지는 교사용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육시설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교사용 참고자료를 구비하도록 한다.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할 뿐 아니라 이를 모든 교사가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여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용 참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수를 고려하여 교사당 5권 이상 충분한 양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구비하도록 한다. 교사가 10명 이상 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50권 정도의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수가 1~2명으로 소수인 시설의 경우에도 최소 10권 이상의 참고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용 참고자료로는 보육계획과 보육활동, 놀이, 장애 영유아 생활지도, 아동발달, 심리, 부모교육과 상담 등 보육 관련 전문 자료와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영상자료」 등 교사가 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

-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월간잡지나 영유아용 동화책, 참고자료의 내용이 보육과 관련 없는 내용일 때, 너무 오래 되어서 실효성이 없어진 자료는 교사용 참고자료로 보기 어렵다.
-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꾸준히 새로운 참고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교사용 참고자료의 구입은 학기별, 또는 계절별로 구입 계획을 세워 필요한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는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자료를 점검하여 더 필요한 자료에 대한 구매를 계획하고, 교사용 참고자료 구입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구매 내역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해두어야 한다.
- 보육시설 사정에 따라 꼭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구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대여 자료는 전체 자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참고자료는 자료실이나 교사실 등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모든 교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보육시설에서 교사 당 5권 이상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구비하고 있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보육시설에 구비된 참고자료가 10권 이상이거나는 하나 교사 당 5권 미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교사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곳에 비치한 경우도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용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보육시설에 구비된 참고자료가 10권 미만으로 구비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보육시설의 운영관리는 보육시설의 철학이 반영되며, 시설장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고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지원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들과 교류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면에서의 중요 요소로는 명확한 운영방침 수립, 체계적인 원아 관리, 보육실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준수, 합리적인 종사자의 업무분장과 조직적인 업무 전달과 수행,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관리 등이 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교사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바탕이 되며, 보육과정을 통하여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시설장은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를 위한 환경구성과 충분한 재교육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과 가족이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고,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를 격려하며,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이 영역에서는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인력 관리,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종사자의 근로계약,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보육시설의 부모참여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 찰	면 담	문 서	확인자료
시설의 운영 관리	장 2-1.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	○	운영방침, 시설 안내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	○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이동연명부, 생활기록부,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 관련 기록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		○	이용이동연명부, 출석부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 사례회의 및 협력		○	○	사례회의 기록
보육 인력	장 2-5. 종사자의 근로계약		○	○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장 2-6. 시설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	○	○	업무분장표, 교사회의기록
	장 2-7. 종사자의 교육		○	○	신입 인력 오리엔테이션기록, 재교육 관련 기록
가족과의 협력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	○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실행기록
	장 2-9.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	○	○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개별면담기록
	장 2-10.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	○	○	부모 프로그램 실시 관련 기록(가정통신문 등)
	장 2-1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기록, 회의기록
지역 사회와의 협조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	○	지역사회 연계 활동 기록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	○	개별면담기록, 전문 정보 및 전문가 관련 정보 기록

장 2-1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3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안내한다.
2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는다.
1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및 건전한 발달을 책임지고 가정과 유사한 양육을 제공하며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명확한 운영철학과 보육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보육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시설의 운영철학과 보육목표가 모호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명확한 운영철학과 보육목표, 운영내용을 포함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는 보육시설과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종사자의 업무내용을 소개하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시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한다.**

- 시설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철학과 보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교사 및 종사자들에게 공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수립된 운영철학과 보육목표에 근거하여 운영내용을 구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때 시설장은 교사와 구체적인 운영내용을 협의하도록 한다.
- 운영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프로그램의 특성(보육방침), 보육시간, 보육료, 연령별 집단크기와 교사 수, 보육종사자 구성, 보육시설의 환경(보육실, 실내외 놀이시설 등), 보육시설의 개방원칙 등이다.

-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정통신문, 게시판, 안내 소책자, 리플릿, 홈페이지 등을 들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안내하는 경우이다.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목표가 문서화되어 있고 이와 일관된 보육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설장과 교사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정통신문, 게시판, 안내 소책자, 리플릿,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영방침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상세히 안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에 대한 정보가 문서화되어 있으나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 중 두세 가지 정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보육내용이 이와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와 상반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방침을 부모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 문서화된 운영방침에 대하여 시설장이나 교사가 일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운영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 중 네 가지 이상이 누락되어 있거나, 시설장이나 교사가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3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가 미흡하다.
1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원아에 관한 문서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고 친숙한 양육자와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불안해진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가족도 장애 영유아를 새로운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주 양육자가 바뀌면 또래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새로운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적응 절차를 마련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효율적인 원아관리를 위해 개별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는 장애 영유아에 관한 기록을 작성, 관리함으로써 영유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영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면담할 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신입 원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부모와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입 원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모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응과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 정식으로 등원하기 전에 부모와 신입 원아가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사전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 단계적으로 단축 보육을 실시하거나, 며칠 동안은 부모가 오전 시간에 신입 원아와 함께 있도록 배

려해주는 등 장애 영유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응절차를 밟아나간다. 경우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으나 3일 미만의 적응과정은 신입 원아를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모의 여건상 단축보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며, 부모와 함께 노력한다.
- 신입 원아의 적응을 돕는 과정은 장애 영유아의 연령, 장애 유형, 개인적인 기질, 이전의 보육시설 경험, 부모의 직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한다. 부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신입 원아의 식습관, 잠자는 습관이나 시간 등의 생활리듬, 성격,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잇감, 특별한 질병이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신입 원아를 위한 적응절차는 학기 초에 들어오는 신입 원아 뿐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는 신입 원아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입 원아로 인해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재원아도 함께 배려하는 노력을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신입 원아 적응을 위한 절차에 대한 안내문과 신입 원아 적응을 위한 절차의 실행 기록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 원아를 위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원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퇴소 관리서류(예 :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생활기록부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예 : 신체계측, 예방접종기록 등).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신입 원아 적응절차가 모든 신입 원아를 대상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 실시되고 있고, 모든 원아의 문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가 미흡한 경우이다. 즉, 최소 일주일 이상의 체계적인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신입 원아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신입 원아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신입 원아에게 적응기간과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신입 원아 적응을 위한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원아의 문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원아에 대한 문서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3일 미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행기록을 남기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수시로 들어오는 신입 원아에 대해서는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기본적인 문서 중 누락된 종류가 있는 경우, 한 종류 이상의 서류에서 절반 이상 원아의 서류가 누락된 경우, 관련 문서가 없는 경우, 모든 장애 영유아의 서류는 갖추고 있으나 처음의 기록이 있을 뿐 계속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3	모든 반에서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다.
2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 이내이나,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반이 있다.
1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반이 있다.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은 장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의 수가 적절하면 교사는 모든 장애 영유아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개별 장애 영유아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할 때 통제나 지시보다 개별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징에 맞추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을 지키도록 한다.

-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 장애 영유아 3인당 보육교사 1인을 배치하며, 장애 영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를 1인씩 증원해야한다.
- 장애아 9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 가능하다.
-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 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은 가능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반에서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경우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법정 비율보다 낮게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 이내이나,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반이 한 반이라도 있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반이 있는 경우이다.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3	종사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2	종사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1	종사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며, 팀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적인 영역의 종사자가 존재한다. 이 각각의 종사자들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 맡은 역할에 대한 존중, 역할수행을 위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때 장애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의 특성상 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종사자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사례회의를 통한 장애 영유아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팀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 가능한 최선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팀 접근법은 장애의 성격이 복합적인 지체 및 복합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하다. 팀 협력을 통해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문을 통한 관련서비스(치료포함)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활동 내에 관련서비스(치료포함)의 목표가 통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팀 협력을 통해서 종사자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구성원들 간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보육시설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종사자 간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활한 논의와 협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례회의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지도에 대한 팀 협력과 교육내용의 진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기록은 장애 영유아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육계획과 운영에 종사자 상호 간의 업무연계 및 팀 협력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에 대한 팀이 조직되어 있고, 사례회의 보고서에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회의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 팀 협력과 교육내용 적용과 진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종사자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육계획과 운영에 팀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에 대한 팀이 조직되어 있으나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례회의의 내용이 보육계획과 운영에 잘 활용되지 못하는 등 팀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종사자 상호 간의 업무보고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보육계획과 운영에 팀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에 대한 팀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사례회의 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2-5	종사자의 근로계약
3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시설장이 모든 종사자에게 알려준다.
2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시설장이 모든 종사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1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없거나, 시설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문서화된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은 모든 종사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사이의 복무 관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육시설 운영을 체계화한다. 종사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휴가 등을 계획할 수 있다면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을 문서화하도록 한다.**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내용에는 자격과 근무기간에 따른 급여기준, 퇴직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휴가, 휴직, 사직 절차 직무내용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중에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시설장은 이를 문서화하고 임용된 모든 종사자에게 설명해 주며 준수해야 한다
- 시설장은 종사자가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할 경우 성의껏 세부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
- 복무규정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경우 이로 같음한다.
- 근로계약서는 임용된 모든 종사자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며 쌍방이 날인한 후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시설장이 모든 종사자에게 알려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시설장이 모든 종사자에게 이를 알려주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두세 가지가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이 없거나, 시설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이다. 즉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거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종사자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에 대한 내용을 시설장이 모든 종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2-6	시설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3	시설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교사회의를 월 2회 이상 한다.
2	시설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교사회의를 월 2회 미만 한다.
1	시설장과 교사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회의를 월 1회 미만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장과 교사는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보육시설과 관련된 공동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써 보육시설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장과 교사는 정기적인 교사회의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을 논의하여 시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의 내용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외에 보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 개별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지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장과 교사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장은 보육시설 전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
- 교사는 시설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시설장과 교사는 반드시 업무분장된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비품 관리, 도서관리, 실외시설 관리 등과 같은 공동 업무는 업무내용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사들에게 분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지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2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교사회의에서는 보육내용과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교사회의에서는 시설장과 교사 간, 교사와 교사 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교사회의 외에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등 교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바람직하다.
- 교사 간 상호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필요하다면 소그룹회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시설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교사회의를 월 2회 이상 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고, 시설장과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시설장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교사회의가 월 2회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보육시설 내에 문서화된 업무분장은 있지만, 본인의 담당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문서화된 업무 분장과 실제 수행 역할이 다른 종사자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회의를 월 1회 미만 하는 경우이다.

장 2-7	종사자의 교육
3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는다.
2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미흡하거나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지 못한다.
1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시설장이나 교사가 있다.

새로 들어오는 교사나 기타 종사자(예: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등),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은 그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란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 목표, 보육내용과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절하게 실시하면 인력이 바뀌는 기간 중 보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뿐 아니라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장애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시설장과 교사는 아동발달, 보육에 관한 직무·승급교육을 포함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받아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시설장과 교사 재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사·대체교사·기타 종사자·실습생·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보육 인력에 대한 각각의 문서화된 내용이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보육인력이 보육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한다.
- 교사와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에는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 목표, 보육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 특성, 직무에 관한 설명, 고용과 관련된 조건과 용어들에 대한 설명, 불만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대

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지침,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 대체교사에게는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외에 주간보육계획, 일과운영, 장애 영유아 생활지도, 장애 영유아 특성, 반 운영 등을 설명해준다.
- 보육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육실습생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보육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 특성, 보육실습생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한다.
- 이 밖에 일정 기간 동안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보육시설의 보육 철학과 근무 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사자의 재교육을 할 수 있다.

-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아동발달, 보육에 관한 직무·승급교육을 포함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받아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
-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워크숍, 지역별 모임, 보육시설 내 교육모임, 인터넷 강의, 보육정보센터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모든 종사자가 골고루 재교육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종사자들이 자신이 언제 재교육을 받는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종사자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재교육 참여자가 있을 때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기록, 관리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즉 교사·기타 종사자·실습생·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계획되어 실시되며, 시설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승급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함’ 수준(2점)은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미흡하거나,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신입 보육교사와 종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있으나, 전체 종사자가 아니라 보육교사·기타 종사자에게만 실시되고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다른 인력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또한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이 오직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뿐인 경우, 시설장과 모든 보육교사가 직무·승급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실제로 재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함’ 수준(1점)은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이다. 즉 신입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지 않거나, 신입 보육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3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2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1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보육시설에 처음 장애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는 장애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 하고 걱정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은 보육시설의 철학과 보육과정의 내용을 주제로 설명하고, 신입 원아의 초기 적응을 위해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은 새로 들어오는 원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신입 원아 부모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받고 의논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초기 적응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학기 초 신입 원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집단으로 실시한다.
- 이외 중간에 입소한 장애 영유아의 부모에게도 집단 혹은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한다.
-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와 운영내용(보육종사자 소개, 보육시간, 보육시설의 환경,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과정, 보육시설의 개방원칙, 등·하원 절차, 안전지침 등)을 설명하며, 특히 신입 원아의 초기 적응을 위해 보육 시설과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한다.
- 오리엔테이션은 부모에게 안내할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실시한다.
-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설장이나 교사의 설명뿐 아니라 부모들의 의문사항이나 건의에 대한 질의응답도 충분히 다룬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이다. 즉 연 1회 정도 체계적으로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새로 입소한 원아 부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시행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 수준(2점)은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즉 연 1회 정도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있으나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 주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 중간에 새로 들어오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적힌 간단한 안내 자료로 대신하는 경우이다.

장 2-9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3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데 가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모와 가족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보육시설의 철학과 보육내용이 자신의 자녀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개별 장애 영유아가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사는 부모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해야 한다.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장애 영유아의 생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합한 지도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교육방침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가정통신문, 게시판, 전화,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있다.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을 포함하여 이 중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에는 반드시 보육활동계획안과 급·간식 식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별 장애 영유아의 매일의 보육경험에 대해서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등을 통해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아의 경우에는 수유, 이유, 배변, 수면 상황과 영아의 전반적 기분과 건강상태에 대해 매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의 경우에는 보육활동 시 유아의 개별적 반응이나 문제행동, 이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법,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는 연 2회 이상 일대일 부모상담, 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원아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영아의 경우 발달적 변화가 빠르고, 개별적 배려가 더 많이 요구되므로 유아보다 자주 부모와 개별면담을 할 수 있다.
 - 특별한 문제가 있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다른 영유아보다 더 자주 부모와 개별면담을 할 수 있다.
 - 개별면담을 할 때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변화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도방법을 중심으로 부모와 면담한다.
 - 다만, 개별면담의 방법 중 전화상담은 영유아발달 상황 및 지도방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한하며 이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전화로 부모와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개별면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적인 방법(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등)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연 2회 이상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여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이다.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양방향적인 방법(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등)을 포함하여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여도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내용이 안내되지 않는 경우, 보육활동계획안이나 급·간식 식단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정과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연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개별면담 내용이 개별 영유아의 발달 상황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가정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 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시설장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도 부모 집단면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2-10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3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다.
2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1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하다.

보육시설의 운영방침이 부모에게 개방적이라면 부모는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자녀를 참관하거나, 자녀와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의 행사나 보육과정에 부모가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거나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부모는 보육일과를 지켜보거나 활동의 일부를 장애 영유아와 함께 하면서 장애 영유아의 보육경험이나 행동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부모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장애 영유아의 활동과 발달에 대해 다른 부모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서로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실질적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부모가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입소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희망할 경우 자녀의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된다.
- 희망하는 부모는 시설장 및 교사와의 협의 하에 보육시간 중 언제라도 보육실 밖의 창문을 통하거나, 보육실의 일방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장소에 설치된 CCTV 모니터 등을 통해서 자녀의 보육활동을 참관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와의 협의 없이 부모가 무분별하게 보육실을 방문하여 장애 영유아의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보육실 관찰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시설장이나 교사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시간을 약속하고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정규 보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의 행사나 보육과정에 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행사나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배우고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관한 정보(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최 일정, 비용 등)를 안내하여 희망하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개수업에 부모를 초청하거나, 부모가 자원봉사자, 보조교사, 주제 활동의 주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보육활동의 일부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사전안내에 따라 현장학습, 보육시설 주변으로의 산책, 소풍 등 보육시설의 외부로 장애 영유아가 집단으로 외출해야 할 때, 알뜰시장, 크리스마스 행사, 생일잔치 등 보육시설의 행사에 희망하는 부모 및 가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문항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는 경우이다. 부모에게 보육실을 참관하는 절차와 방법이 안내되어 부모가 보육실을 참관하기가 용이하며, 시설의 행사나 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연 3회 이상인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문항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이다. 사전에 부모에게 자녀의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안내되지 않는 경우, 참관방법과 절차는 안내되나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보육실 참관을 하기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의 행사나 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연 2회 정도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문항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한 경우로 보육시설의 행사나 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연 2회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이다.

장 2-1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3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설운영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부모에게 안내한다.
2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하지는 않는다.
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제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

보육시설은 부모 및 주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보육에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육시설, 부모,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25조)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보육시설, 자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아는 부모, 그리고 보육시설이 속한 주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 영유아 보육에 효과적일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보육시설의 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외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방침의 변경 등에 대해 함께 의논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계획과 회의 결과를 부모에게 알려 모든 부모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설운영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부모에게 안내하는 경우이다.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가 부모에게 적절하게 안내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회의 내용이 가정에 안내되고 있지 않아 일반 부모들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제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이 보육시설의 장, 교사 대표, 원아 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 중 일부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경우,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3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1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육시설에서는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령, 지역사회의 학교에서 오는 자원봉사자, 노인복지관 등에서 오시는 어르신 봉사자, 인근 복지관과의 활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기관에서의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보육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가 가정과 보육시설 외에 지역사회 환경을 보다 친밀하게 이해하도록 공원, 어린이도서관, 병원, 경찰서, 초등학교, 대학, 동(면)사무소, 공원 관리사무소, 소방서 등의 가까운 장소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 영유아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하여 위급할 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건강한 치아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있는 공통된 자원뿐 아니라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해볼 수도 있다. 가령, 지역에 위치한 해변, 생태습지를 방문하거나 그 지역사회에만 있는 특별한 박물관,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바람직하게는 장애 영유아가 보육시설 내에서나 해당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이나 놀잇감을 빌려주는 것, 인근 노인정,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장애 영유아가 노인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월 1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월 1회 미만으로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3개월에 1회 이하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3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2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1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없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

보육시설에는 가정환경이나 발달적 특성이 또래들과 달라서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하는 장애 영유아가 있다. 특수한 요구사항의 예로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행동문제(예 : 다른 장애 영유아보다 어떤 사물을 아주 무서워함,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함)에서부터 동생이 태어나는 것, 이사 등과 같은 가족의 변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근래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장애 영유아나 부모 중 한 쪽 이상이 외국 출신인 다문화가정의 장애 영유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보육시설이나 또래와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가 있을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적응 문제를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장과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사려 깊고 전문적인 태도로 설명해주어야 하며, 부모 및 전문가와 함께 장애 영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조하여 노력한다.**

- 개별면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적응문제나 장애 영유아 가족의 당면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한다. 또한 다른 장애 영유아와 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안내한다.
- 장애 영유아의 적응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와 보육시설이 장애 영유아

를 돕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논의한다. 이때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는 전문가로서 부모가 자녀의 적응 문제가 이들의 발달에 궁극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부모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려 깊은 태도로 상담에 임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특정 문제를 도와줄 전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예 : 서비스 종류, 전화번호, 비용 등)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모에게 안내해준다.
- 보육시설은 부모가 장애 영유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동사무소, 구청 또는 전문가(예 : 의사,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장애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부모와 논의한다.
- 특수한 요구가 있는 장애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협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보육시설에서 가정통신문, 개별면담, 관찰 등을 통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에게 이를 사려 깊고 전문적인 태도로 설명한다. 아울러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부모에게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의 연락처나 기본정보를 제공해줄 뿐, 부모가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혹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 장

애 영유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없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경우이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과정을 통해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신체, 사회성·정서, 언어, 인지능력 등이 적절한 시기에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보육과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보육과정은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연령 및 발달에 따라 적합한 보육내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과정 안에서 장애 영유아는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며, 대·소근육활동, 언어활동, 음률과 미술활동, 수·과학 활동, 역할놀이와 쌓기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상적 양육경험과 다양한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친숙한 활동과 새로운 활동을 적절하게 인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보육 과정에는 실내외에서 진행되는 활동 뿐 아니라 보육시설이 속한 주변 이웃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개인 간 발달차가 크고, 개인 내에서도 발달 영역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한 경험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집중시간이 짧으므로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아들은 스스로 보육활동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게 표준화된 보육과정을 제공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공공성을 지향하지는 보육이념을 실제로 구현하지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보편적 보육내용인 ‘표준보육과정’(2007년 1월 3일 고시)을 개발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영유아가 경험할 보육내용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가지 영역으로 연령 집단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보육내용을 균형 있고 계열성 있게 경험하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참조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영역에서는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의 실행에 초점을 두며, 보육계획안의 수립, 균형과 실행, 통합적 운영, 보육과정 평가 그리고 영역별 보육활동 운영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보육 활동 계획과 구성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		○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		○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		○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		○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		○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	○	
보육 활동	장 3-8. 신체활동	○		○	
	장 3-9. 언어활동	○		○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		○	
	장 3-12. 자연탐구활동	○		○	
	장 3-13. 예술활동	○		○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		○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		○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3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이 장애 영유아의 연령, 흥미,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 있다.
2	보육계획안은 구체적이거나 연령, 흥미, 계절 등의 고려가 미흡하여 연계성이 적다.
1	보육계획안이 없거나 있어도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도 없다.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일 년 동안 경험할 보육내용을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일 년 동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연간 보육계획안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월간(또는 주간) 및 일일 보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연간 보육계획안은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해 계획하는 한 해의 전체적인 보육내용으로써, 다루어야 할 주제와 다루어질 내용 및 행사일정 등을 근거로 계획한다.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연간 보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장애 영유아가 생활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각 일과에 맞추어 계획한다.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을 계획할 때에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운영 예시로서 개발되어 보급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개별화 보육계획안(IEP)은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과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서 가장 발달 속도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흥미, 요구, 학습 속도, 기질, 능력, 참여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연간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보육 철학과 목표, 지역사회 주변 환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과 흥미, 계절, 사회적인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들(예: 월드컵 개최에 따른 축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고조 등)을 반영해야 한다.

- 연간 보육계획안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은 서로 연계성 있게 수립하되, 전년도에 실시된 각 보육시설의 보육과정 수행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전체적인 보육일과(시간적 구분) 및 보육실의 물리적 공간 구분(실내외, 실내흥미영역)에 따라 실시 가능한 구체적 활동으로 계획하여 제시한다. 이때 장애 영유아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일상적 양육에 대한 내용, 휴식시간이나 정리 정돈, 등하원지도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 일일 보육계획안을 별도로 작성할 경우에는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하루 보육일과에 따라 여러 보육활동에 대한 준비 및 진행, 상호작용 방법, 공간구성 및 집단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계획한다면 수준 높은 보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교사 자신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 연간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각 반별로 수립되어야 하나, 동일 연령 반의 경우에는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그 반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 및 수준별 표준보육과정의 보육내용을 고려하여 보육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목표를 설정하고 보육내용을 각 반별로 일 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연간 보육계획안을 수립하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특성(연령, 흥미, 계절 등)을 고려하여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을 연계성 있게 수립한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계획안이 문서로 구체화되어 있으나, 연계성이 적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장애 영유아의 연령과 계절, 흥미, 경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혼합연령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경우, 연간 계획과 월간(또는 주간) 계획안이

반별로 모두 있기는 하지만, 연간 및 월간(또는 주간) 계획안, 개별화 보육계획안이 서로 연계성이 적은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문서로 작성된 보육계획안이 없거나, 있어도 연간, 월간(또는 주간) 계획안 주제가 거의 연계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또는 한 반이라도 보육계획안이 없거나,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3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2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지 않는다.
1	보육활동이 주로 대집단 활동이나 일상적 양육이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의 일과는 가정에서처럼 장애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배려하기보다 집단생활로 이끌게 될 우려가 있다. 보육시설의 하루 일과가 균형적이지 않아 주로 대집단 활동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활동만 주로하거나 반대로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활동만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장애 영유아의 발달을 균형 있게 촉진하기 어렵다.

보육시설에서 균형 잡힌 보육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고른 발달을 이끌게 되므로,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일과 중 대·소집단 활동과 개별 활동,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학기 초일수록, 집단 내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가 크게 날수록 대집단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용히 앉아 집중하는 정적 활동과 움직임이 많은 동적 활동도 일과 중에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점심시간이나 화장실가기, 씻기, 머리 빗기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양육 활동과 또래나 교사, 교구와 상호작용하는 보육활동도 모두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과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보육활동은 긴장과 이완, 영유아 주도 활동 및 교사 주도 활동, 개별 및 집단참여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안에는 교육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상적

활동까지 배려되어야 하며 균형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 보육활동 중에 교사와 장애 영유아(개별 및 대·소집단)의 상호작용,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유아와 교구와의 상호작용 등의 기회가 골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보육활동의 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된 보육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날의 장애 영유아의 상태나 반응, 교실의 상황, 주변 환경(날씨나 행사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적 양육활동을 더 많이 배정하고, 대집단 활동 보다는 소집단 활동이나 개별 활동을 적절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적 활동이 교실 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하루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고 자 한 경우이다. 즉 대·소집단 활동, 개별활동, 동적 활동 및 정적 활동, 그리고 일상적 양육활동과 놀이활동 시간, 교사 주도적 활동과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 시간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하루를 운영하는 경우가 우수한 수준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위의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 교사 주도적 활동이 장애 영유아 중심의 활동보다 많이 계획되어 있거나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이 모두 계획되어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일상적 양육 관련 활동에 치우쳐 있거나 일상적 양육활동은 무시되고 교사가 보육활동만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아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개별활동이나 소집단 활동보다 주로 대집단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동

적 활동보다는 정적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육계획안은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집단 활동 중심으로 실행되는 경우나 정적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대집단 활동이 대부분이거나, 주로 신체적 움직임이 없는 정적 활동 또는 동적 활동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과가 일상적 양육 관련 활동들로만 계획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또한 관찰 시에는 보육계획안에 의한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기간의 보육계획안 및 보육일지가 누락되어 보육활동의 균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3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매일 2시간 30분 이상이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2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30분 미만이거나, 한두 영역의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1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이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장애 영유아가 교실의 여러 흥미영역 활동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으로 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자신의 놀이 속도에 맞추어 시작과 끝을 맺는 개별 활동 시간이지만 장애 영유아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나 준비한 환경의 놀잇감을 선택하여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장애 영유아 스스로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을 흥미영역에서 만들어 사용하며 놀이를 확장해 가기도 한다. 장애 영유아는 자유선택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래와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실 내에는 모든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흥미와 요구, 능력을 사전에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교재, 놀잇감을 다양한 흥미영역에 미리 계획하고 환경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자유선택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놀잇감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별 흥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놀잇감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교사는 일과 중에 장애 영유아가 충분히 자유선택 놀이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흥미영역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여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놀이나 소집단 놀이가 확장되도록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격려하여야 한다.
-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대한 평가는 장애 영유아가 현원의 70% 이상 등원하였을 때부터 시작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이 흥미영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오전과 오후를 모두 합쳐 매일 총 2시간 30분 이상 골고루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때 실외놀이시간은 자유선택활동시간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일과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2시간 30분 미만인 경우이다. 또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고 있으나 활동들이 한 두 영역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일정 기간의 보육일지가 없어 자유선택활동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3	실외활동 시간이 주 1회 이상이고, 다양한 실외활동이 이루어진다.
2	실외활동이 월 2~3회이거나, 한 가지 활동으로만 이루어진다.
1	실외활동이 월 1회 이하이다.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햇빛과 바람, 하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외에서 장애 영유아는 대근육 움직임을 활발히 사용할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접하게 된다.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꽃이나 나무를 가까이하며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정서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내활동 뿐만 아니라 실외활동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여 장애 영유아가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주 1회 이상 실외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외활동 시간은 날씨, 계절, 장애 영유아의 건강상태, 전염병 질병 유행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즉 여름날에는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실외활동을 계획하고, 겨울에는 햇살이 따뜻한 시간에 밖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가 오거나 황사 등 실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등 대체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외활동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지역사회 놀이터나 공원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뇌병변 장애와 같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 실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베란다나 마당의 그늘에 나와 일광욕을 하거나 바깥 공기를 쐬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 영유아로 하여금 건강한 정서를 갖게 하고, 신체발달을 자극하게 된다.
-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자전거 타기나 미끄럼 타기, 달리기 등의 대근육

활동 뿐 아니라 술래잡기, 그림자 따라다니기, 바람개비 돌리기, 인형 옷 빨아서 말리기, 모래 파고 담기, 수로 만들기, 물로 그림 그리기, 사계절 꽃과 나무 또는 곤충 관찰하기, 식물 기르기, 나무 그늘에서 그림책 읽기, 음악 듣기 등이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나 발달 특성, 장애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실외활동을 주 1회 이상 하며, 실외에서도 실내에서처럼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실내에서 게임이나 신체활동 등 대체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외활동이 월 2~3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주 1회 이상 실외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제한된 놀이만 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실외활동을 월 1회 이하로 하는 경우가거나, 활동에 대한 실행기록이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3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구분하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2	일과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다.
1	일과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어져 있다.

보육시설에서 일과를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로 운영하는 방식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 장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통합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등원시간에도 장애 영유아의 수행수준에 따라 인사하기, 기본생활습관 형성하기, 자기 이름 인식하기 등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외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모이기,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오늘 날짜·날씨 이야기하기, 이름 부르기, 주제에 따른 이야기 나누기, 새 활동 소개, 일과소개 등의 전 과정을 통해서도 전인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일과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장애 영유아의 흥미가 반영되어 자발적인 활동 참여가 높아지게 된다. 만일 장애 영유아가 각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로 분리된 치료활동에만 참여하게 된다면, 성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활동이 주도되기 쉬우며, 장애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보육실과 치료실을 완전히 분리하여 일상적인 보육활동과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장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장애 영유아의 보육과 치료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가지 치료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관련서비스 역시 일상생활에서 다른 장애 영유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일상적인 보육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분리됨이 없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되, 관련서비스 역시 일반 보육활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일과를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예: 언어치료 시간, 미술치료 시간 등)을 시간·공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즉, 일과 중 기본생활습관이나 일과적응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일과를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영역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은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일과를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로만 구분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즉,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로 구분하고, 장애 영유아가 분리된 공간에서 시간을 바꿔 같은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일과를 진행한다.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3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자주 제공한다.
2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가끔 제공한다.
1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란 가족과 보육시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생활공간에서 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 또는 활동을 말한다. 장애 영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에 친숙해지면서 경험을 쌓아 나간다. 그러나 하루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을 적절히 보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만약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볼 수 있는 곳이나 일상적 활동을 자주 경험하도록 한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생활주제와 연관지어 계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예로는 동네 산책하기, 걸어서 가는 동네 공원가기, 가게에서 물건 둘러보고 사보기, 어린이집 울타리 내에 있는 텃밭 가꾸기, 가까운 시장이나 대형마트 가기, 동네에 있는 꽃집, 빵집, 과일가게, 주유소 등을 방문하기, 동네 특별한 행사 참석해 보기 등이 있다.
- 이동이 불편한 장애 영유아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보조교사나 자원 봉사자, 부모의 지원을 활용하거나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장애 영유아의 수를 조절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 주변 동네 산책하기, 가게 가기, 공원 가기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한 달에 1회 이상 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두 달에 1회 정도 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거나, 두 달에 1회 미만으로 거의 하지 않는 경우, 활동에 대한 실행기록이 없는 경우 등이다.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3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진다.
2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미흡하게 이루어진다.
1	보육과정을 평가하지 않거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육과정에는 개별 장애 영유아나 집단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연간, 월간, 주간 보육내용을 적절하게 계획할 뿐 아니라, 계획된 것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과 이러한 평가 내용을 다음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반영하는 것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개별 장애 영유아가 어떤 보육활동을 경험하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보육과정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보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는 일일 보육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매일 진행하였던 활동과 자료가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하루 일과가 장애 영유아의 신체리듬과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진행된 활동 중 장애 영유아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활동의 시간 배정은 적절했는지, 어떤 점을 더 수정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한다.
- 주간 보육계획을 수행한 후 실제 진행된 활동과 추가로 진행된 활동, 진행되지 않고 변경된 활동 등의 이유와 장애 영유아의 참여 정도 및 흥미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여 두면 그 다음 주 보육활동을 진행할 때나 다음 해에 같은 주제에 대한 보육내용을 계획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계획한 활동과 실시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보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이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계획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번 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관찰은 모든 흥미영역에서의 놀이나 활동, 실내외 공간, 견학이나 행사, 일과의 모든 시간에서 장애 영유아가 나타내는 반응이나 행동을 고루 포함해야 한다.
- 개별 장애 영유아의 관찰 기록을 기초로 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도에 반영한다. 또한 모아진 관찰 기록들을 주기적(분기나 6개월)으로 종합하며, 이를 부모 면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장애 영아의 경우에는 우유 먹기,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기, 잠자기 등의 일상 양육에 대한 내용과 특별한 행동 등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관찰 기록을 통해 보육시설과 가정 간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면 시간동안 영아의 얼굴 위치, 수면 시 움직임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 기록하여 영아 돌연사에 대처하고 미리 예방하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있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수행하였던 활동에 대해 교사회의에서 평가하고, 보육일지에 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기록하며 이를 참고로 새로운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별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찰 기록지에 다양한 놀이와 흥미영역, 행동 특성, 또래 간 상호작용 등을 고루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 과정을 평가하고, 개별 영유아에 대한 관찰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이다. 즉, 보육과정 평가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향후 계획 수립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또한 개별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

찰 기록을 하고 있지만 관찰 내용이 너무 짧거나 한두 가지 놀이나 활동, 영역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또한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 기록이 누락된 영유아가 일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과정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개별 장애 영유아에 대한 관찰 기록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3-8	신체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가끔 한다.
1	대근육 활동이나 소근육 활동을 거의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는 신체활동을 통해 안정된 자세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안전능력, 사회성 발달 및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 증진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대·소근육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신체발달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신체활동은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장애 영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대·소근육을 포함하여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움직임의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여 움직임의 강도, 자세조절, 눈과 손의 협응, 사물조작, 자세잡기, 이동능력, 수정능력, 일반화, 감각운동 기능의 통합, 공간지각 등을 위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신체활동은 장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달을 기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 신체활동은 장애 영유아의 현재 대소근육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매일 경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근육을 위한 신체활동은 주로 실외나 유희실 등 넓은 공간에서, 소근육을 위한 활동은 실내나 실외에서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대근육 활동은 오르기, 걷기, 뛰기, 내려오기, 던지기, 균형 잡기, 공굴리기, 밀기와 끌기, 계단 오르기, 터널 통과하기, 그네타기, 미끄럼 타기, 줄 타고 내려오기 등과 구조화된 활동이 포함된다.

-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물리적 치료활동을 통하여 대근육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 소근육과 협응력 향상은 찢기, 구기기, 끼우기와 빼기, 자르기, 집기, 꿰기, 맞추기, 두드리기, 집어넣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능해진다.
- 신체활동을 통한 반복학습과 신체활동 시간은 장애 영유아의 체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짧게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가 즐거워하고 흥미로워하면 활동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신체(대·소근육) 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이다. 즉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실외나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대·소근육 활동을 매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발달 수준에 맞는 높이의 경사진 기구를 오르고 내리는 활동이나 봉봉카 타기, 구르기, 공 던지기 등의 활동이 실외나 실내 공간에서 매일 이루어지며, 감각 능력을 촉진시키는 촉감 느끼기, 밀가루 반죽놀이 등의 활동과 소근육 발달을 위한 두드리기, 끼우기, 손가락으로 잡기 등의 활동을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신체(대·소근육) 활동을 가끔 하는 경우이다. 즉 실외나 실내 공간에서 대·소근육 활동을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신체(대·소근육) 활동을 거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대근육 활동이나 소근육 활동을 일주일에 2회 이하로 하고 있는 경우이다.

장 3-9	언어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을 가끔 한다.
1	언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언어활동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따로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며,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고,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친구가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

기초적인 언어활동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이나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는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며 글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

언어발달은 언어 이해력이 발달된 후 이해된 말을 적절히 표현하는 표현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지체된 영유아의 경우에는 표현 언어에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의사소통 내용의 이해와 표현, 바른 진단을 통해 잠재력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의 다양한 의사소통에 대한 진단결과와 이러한 능력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찰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한 언어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은 발달 단계에 적합하면서 친숙한 내용의 언어활동이어야 한다.
- 언어활동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네 영역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며,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교사가 이를 받아서 써줄 수 있다. 이 경우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언어 경험이 영유아기에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들은 대부분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폐, 정서장애, 청각장애 영유아에게도 공통적으로 언어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가 발달되는 것은 아니고, 인지, 사회성, 운동성 등이 골고루 발달되어야 언어능력이 발달되므로 언어치료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동화, 동시, 동극은 장애 영유아의 언어적, 신체적 표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동화의 내용을 선정할 때는 흥미롭고 단순·명쾌하며 실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등장인물이 하는 말, 특이한 의성어, 의태어 등을 강조하여 준다. 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교사가 지정해서 참여를 도와주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듣기, 말하기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활동을 자주 제공하는 경우이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들려주기, 교사나 친구의 이야기 듣기 등의 경험을 하게 하거나, 장애 영유아가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책을 자주 읽어주고 읽은 글에 대해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경우, 자신만이 아는 글자로 쓰도록 북돋워주는 경우 등이다. 또한 언어발달이 지체된 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해주며, 장애 영유아의 언어적 결함과 장애상태(예: 청각장애)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 활동이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언어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3	예절과 질서, 규칙 지키기, 정리정돈 등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럽게 보육 과정에서 제공한다.
2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가끔 하거나, 활동을 하더라도 교사 지시적으로 이루어진다.
1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기본생활 관련 활동이란 장애 영유아가 혼자서 옷을 입고 벗으며, 주변을 정리 정돈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간수하는 등의 자조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기에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영유아기 이후의 삶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생활 관련 활동은 장애 영유아가 평생동안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기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및 타인에 대한 예절, 절제, 질서지키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길러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생활에 관련된 행동은 한 번 형성되면, 형성된 것을 다시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행동을 습득하도록 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교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본생활 관련 활동 중에서 청결에 관한 부분은 건강과 영양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제외되었다.

■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 기본생활 관련 활동은 교사가 별도로 활동을 계획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관련 상황을 활용하여 장애 영유아가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물이나 간식을 먹을 때, 실외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을 때, 화장실을 사용할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 영유아가 많을 때, 원하는 책을 다른 친구가 먼저 읽고 있을 때 등의 상황에서는 자신이 먼저 하고 싶어도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질서 지키거나 양보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 기본생활 관련 활동은 반복적이지만 교사가 주로 지시하는 식으로 경험되지 않아야 한다. 교사가 지시를 하게 되면 장애 영유아는 자신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 개별 장애 영유아가 어떤 행동을 혼자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더 익혀야 하는가 등을 관찰하여 기록해 두고 이를 기초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생활 관련 활동에는 일상생활에서 휴지를 보육실 내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놀이 후 정리정돈 하기, 자기 물건을 잘 보관하기, 등하원시에 교사나 부모에게 인사하기, 실외에서도 공공질서 지키기 등이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되 스스로 즐겁게 하도록 격려한다.
-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직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영아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시간을 길게 갖고 기본생활을 습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영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관련 활동을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웃옷을 완벽하게 입는 것은 처음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영아가 웃의 팔 한 쪽을 끼우는 것을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하다가, 이것이 될 경우 다시 다른 한쪽의 팔을 끼우기, 단추를 아래 몇 개만 스스로 끼우다가 위의 단추까지 서서히 모두 끼우기 등 단계적인 경험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보육과정이나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경험하는 경우이다. 정리정돈, 옷 입고 벗기 등 자조능력 키우기, 예절과 질서 지키기 등의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반복적으로 즐겁게 경험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자조 능력 기르기, 예절과 질서 지키기 등의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일상에서 제공하나 지도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대부분 교사 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이 뛰어다니거나 장난치다가 교구 바구니를 엎질렀을 때 교사가 정리하라는 말만하거나, 교사가 대신 정리해주는 경우, 화장실 사용 시 줄서기는 잘 하나 화장실 사용 후 실내화가 하루 중 대부분 정리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영아에게 엄격하게 줄서기를 시키는 등 개별적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다루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생활 관련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대신 해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자주 제공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가끔 제공된다.
1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다.

장애 영유아는 비교적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낮으며, 또래에게 사회적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도가 낮고, 상호작용에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적다. 한편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기회나 갈등해결,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또래들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적절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성 증진 활동은 특별히 계획된 시간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것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 행동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다른 장애 영유아나 성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장애 영유아가 다른 장애 영유아나 성인과 놀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적절한 시작 행동 및 반응 행동을 지원한다.
- 게임, 신체표현 활동, 자유놀이 시간 외에 등하원 시간, 간식 시간, 화장실가기, 실외놀이 등 여러 상황을 이용하여 교사는 개입과 상호작용, 의사소통과 짝 모델의 제공, 반응적인 성인의 태도 등을 통해 장애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켜 주도록 한다.
- 사회성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으로는 친구와 놀잇감 나누기, 협동하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눈 마주치기, 웃기, 손잡기, 인사 나누기 등이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이 자주 제공되는 경우이다. 즉, 위에 기술한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일상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자주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유놀이나 공동작업, 게임에서 협동하기, 간식 시간을 통한 나누기, 협동하기 등이 있으며, 교사가 “○○가 블록을 들고 오는데, △△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이 가끔 제공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사회성 증진 활동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사회성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이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다.

장 3-12	자연탐구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가끔 한다.
1	수활동이나 과학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수·과학에 대한 개념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므로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과학 활동 계획 시, 추상적인 자료나 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과 사물을 기초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수활동 경험과 탐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과 사물을 경험하면서 수 개념과 과학적 현상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가 수·과학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 카드, 그림 자료 등과 같은 평면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암기하도록 하기보다는 실물 자료와 주변 생활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다양한 수·과학 활동은 자유놀이시간, 간식시간, 과학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한 일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수활동은 모양·색·크기·길이에 따른 분류하기, 일대일 대응하기, 수세기, 비교, 서열 등의 수 개념을 학습하는 활동 등이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과학활동은 우리 몸 탐색하기, 동·식물 관찰하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여러 가지 물체 탐색하기, 도구와 기계 관심 갖기 등이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활동을 가끔 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수활동이나 과학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다.

장 3-13	예술활동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자주 한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가끔 한다.
1	음악·동작활동이나 미술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영유아기의 보육일과에서 다양한 악기나 동작을 위한 소품, 주변의 자료나 폐품, 미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음악, 동작, 미술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험은 중요하다. 이러한 예술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때 즐거움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음악, 동작, 미술의 예술활동은 모두 장애 영유아가 매우 좋아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여러 미술 자료를 활용해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애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활동을 접하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험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내부에 있는 독특한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건강한 정서발달을 돕는다. 따라서 표현활동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반응이나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장애 영유아가 똑같이 표현하고 따라하도록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표현이나 창의적 특성을 키우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 교사의 지시나 다른 친구의 반응을 따라서 완성된 결과(물)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과정을 즐기도록 격려한다. 다른 친구나 교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나 만드는 순서를 장애 영유아에게 보여주고 전체 유아가 똑같이 따라하도록 하는 것은 창의적인 표현 증진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보다 조금은 덜

정교하고 영성하지만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술활동은 그리기와 자르기, 접기 등의 활동 외에도 입체 구성하기, 콜라주, 찰흙으로 구성하기, 노끈이나 실처럼 선을 이용하여 활동하기, 찍기, 붙이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미술활동 자료는 종이 뿐 아니라 천, 비닐, 돌, 잎사귀, 과일껍질, 호일 등 주변의 다양한 재질을 활용하도록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미술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며, 작품의 완성도나 속도, 순서에서 개인차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영유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음률활동의 예로는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탐색해보거나 그러한 소리를 자신이 만들어보기, 다양한 리듬악기나 폐품악기 등을 이용해서 소리 내보기, 독특한 자신만의 리듬 만들어보기, 다양한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신체로 표현해 보거나 소품(예: 스카프나 리본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해 보기 등이 있다.
- 장애 영유아가 친숙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악기부터 제공하도록 하며, 악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악기가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장애 영유아의 경우 선택의 폭을 2~3개로 줄여 준다. 노래는 언어지체를 가진 장애 영유아의 경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전체 곡을 다 부르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표현 가능한 부분(예: 의성어, 의태어 등)을 부르도록 하여 참여를 이끈다.
- 교사는 예술활동 진행 시 장애 영유아의 단순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도 격려하여,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마라카스, 실로폰 등의 악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리듬이나 소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 등이 있다. 일부 장애 영유아는 교사가 들려주는 노래를 정확히 따라 부르지는 못하지만, 몸을 흔들며 리듬을 표현하거나 소품을 이용하

여 자유롭게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개별 발달 수준에 따라 크레파스와 같은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굵적거리거나 큰 붓으로 그리기, 도장 찍기, 종이 찢어 붙이기 등의 활동이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가끔 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음악·동작활동이나 미술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다.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3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가 자주 이루어진다.
2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가 가끔 이루어진다.
1	역할놀이나 쌓기놀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는 역할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또 사회적 지식을 재구성하고 사회 내 다양한 역할을 연습한다. 또한 쌓기놀이는 장애 영유아의 소근육과 대근육을 발달시키고, 공간지각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학습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역할놀이 시 함께 연계하여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이에 장애 영유아의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가 자주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지원이 중요하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되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 흥미와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놀이를 위한 소품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역할놀이의 주제를 선택하고 놀이의 역할 선정, 놀이의 시작과 끝, 진행 과정을 자신이나 또래 간 논의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가 계획하고 주도하고 특별한 날을 정하여 장애 영유아가 모두 같은 놀이(예: 시장놀이, 서점놀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여러 종류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역할놀이의 주제는 장애 영유아가 경험한 다양한 사건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놀이,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 장애 영유아가 속한 지역사회와 특성과 장애 영유아가 경험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놀이 주제가 가능하다.

- 역할놀이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교사는 적절히 놀이에 개입하여 놀이 친구로 참여(예: 식당의 손님으로 참여하기, 식당의 주인 역할 하기 등)함으로써 놀이 활성화를 피하도록 한다.
- 쌓기놀이는 단순하게 블록을 쌓아 무너뜨리는 활동에서부터 여러 도형이나 모양을 만드는 다양한 형태로 단계적으로 발전된다.
- 교사는 다양한 쌓기 놀잇감과 동물모형이나 사람모형, 자동차 등의 소품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여 장애 영유아의 흥미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와 쌓기놀이가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장애 영유아에게 가족놀이,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 여러 종류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또 쌓기놀이를 할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배려하여 장애 영유아가 블록을 마음대로 쌓아보고, 구성하는 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역할놀이와 쌓기놀이가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역할놀이와 쌓기놀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3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과 평가를 거쳐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교수목표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관련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를 진단할 때 한사람에 의해서 교육진단·평가 결과가 확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진단·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의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확한 교육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각각의 종사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처음부터 공동으로 진단평가에 참여하는 협력진단 형태가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개별 치료활동이나 집단 치료활동, 짝 치료활동 등을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언어발달이 늦은 장애 영유아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언어치료활동, 감각운동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영유아에게는 감각운동자극을 줄 수 있는 감각통합치료활동, 물리적 자극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에게는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지체된 부분을 자극하여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중복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는 필요한 치료사가 시설에 없을 경우 관련 전문가

관에 협조를 구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눈과 손의 협응력 및 소근육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며, 소집단으로 물리치료활동을 실시하고 감각통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각통합훈련을 시행하도록 한다.
- 치료활동은 시설과 가정 등 아동이 자주 생활하는 생태적 환경에서 모두 협력하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활동 등이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진단되고 계획되어 적절한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치료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 영유아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일상적 양육을 돌보고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장애 영유아와 적절한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수전략을 사용하여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여야 한다. 영역 3. 보육과정에서는 보육내용에 대한 문서화된 계획과 진행되는 활동의 종류, 활동 간 통합적 접근 및 일과의 적합한 시간 구분, 풍부하게 준비된 환경 구성 부분이 포함되었다. 반면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에서는 보육일과 중에 교환하게 되는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또래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사가 수행하는 교수법 등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보육시설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과정적 질을 평가한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와 흥미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경험을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는 보육시설의 질은 물론, 장애 영유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상황마다 발달적, 개별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다면 보육실의 전반적 분위기는 안정되고, 개별 장애 영유아의 자존감은 향상되며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일상적 양육, 교사의 상호작용, 교수법에 초점을 두고 장애 영유아의 식사, 간식, 낮잠 및 화장실 사용 시 교사의 상호작용,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는 태도 및 장애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한 반응,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서 교사의 개입, 보육활동에서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과 장애 영유아의 호기심 장려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일상적 양육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			-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		○	보육일지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			-
교사의 상호 작용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			-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			-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			-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			-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			-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			-
교수법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			-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3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2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	교사가 집단 배식 및 급식에만 열중한다.

장애 영유아의 수유나 식사, 간식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 동안 장애 영유아는 개별적인 음식 선호를 발달시키고 음식의 냄새를 맡으며 즐거움을 느끼고, 배고픔을 채우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며, 안정감을 느끼고,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식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므로 교사는 즐겁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장애 영유아의 식습관과 자율성을 기르도록 한다. 교사는 식사하는 동안 장애 영유아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주의 깊게 들으며, 밝은 표정으로 적절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을 대하는 자세와 식사하는 자세, 먹은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 등을 통해 바른 식사 예절과 편식하지 않는 태도를 장애 영유아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유나 식사, 간식시간이 즐겁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수유나 식사, 간식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편안하고 즐겁게 이끌며, 개별적인 상호작용(예: 개별 장애 영유아의 이름 부르며 대화하기, 식습관을 격려하고 칭찬하기)을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음식을 흘리거나 묻히며 지저분하게 먹는 모습, 느리게 먹는 것, 특정 음식에 대한 장애 영유아의 반응, 도구의 서툰 사용 등에 대해 어른의 기준에서 지도하지 않으며, 개인차를 존중하여 장애 영유아가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교사의 지도 없이 혼자 먹도록 방치하거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모든 음식이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 영유아에게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천천히 지도한다. 간식 및 식사(수유)의 방법과 횟수, 턱받이·우유병·숟가락 등의 사용은 연령과 개인차, 개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조절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수유를 하는 장애 영유아는 교사가 팔에 안고 우유병을 잡아주며,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어 즐겁게 식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나 항상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대화가 적고 상호작용이 일방적이어서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식사 분위기가 즐겁다 하더라도 교사가 가끔 일방적으로 먹여주거나 혼자 먹도록 내버려두는 등 장애 영유아의 식습관을 제대로 격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집단 배식 및 급·간식에만 열중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지 못하고, 급·간식 시간 내내 배식과 급식, 수유에만 열중하거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대화 없이 식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먹여주거나 혼자 먹도록 내버려두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등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에게 수유를 할 때, 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각각 우유병을 주고, 장애 영유아 혼자 우유를 먹게 하는 경우이다. 장애 영유아가 울거나 칭얼대지 않는 한 교사는 거의 개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지저분하게 흘리거나 느리게 먹는 것을 탓하거나 서둘러 먹게 하는 경우 등이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3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한다.
2	낮잠 시간은 있으나,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나 개별적인 낮잠 습관 중 한 가지를 배려하지 못한다.
1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다.

장애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다투기 쉽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 영유아는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나기 쉬우므로 연령에 따라 하루에 한 번 이상 낮잠을 잘 필요가 있다. 장애 영유아의 낮잠의 유무, 낮잠 시간과 횟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는 일과에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창문과 커튼을 쳐서 자연 채광을 가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편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그림책을 읽어 줌으로써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 시간 또는 휴식 시간임을 알게 한다.
- 낮잠은 장애 영유아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라 개별적인 지도를 하도록 한다. 오래 자거나, 짧게 여러 번 자는 장애 영유아, 예민하여 조그만 소리에 잠을 깨는 장애 영유아, 잠들기만 하면 어떤 소리에도 방해받지 않고 잘 자는 장애 영유아, 우유병을 빨거나 일정한 베개나 이불, 인형이 있어야 잠을 자는 장애 영유아 등 매우 다양한 습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는 이러한 개인차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별적인 낮

잠 습관을 배려해야 한다.

- 기저귀를 사용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낮잠 자기 전에 기저귀를 반드시 갈아주면서 장애 영유아의 긴장감을 풀어주어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장애 영유아는 한 쪽에서 쉬거나 조용히 활동하도록 배려하고, 잠이 깬 장애 영유아를 안아 주며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기다려 주고 대화한다.
- 교사는 낮잠을 계획하여 시도하였으나 낮잠을 못 이루는 장애 영유아에게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에게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여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그들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의 낮잠 시간을 매일 마련하고 있지만,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거나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낮잠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인데도 낮잠 시간을 일과에 매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낮잠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개별적인 낮잠 습관에 대한 배려 또한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낮잠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 중 일부 장애 영유아가 낮잠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3	교사는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시 장애 영유아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개별적 상호작용을 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에게 기저귀 갈기 시간이나 화장실 가기와 같은 배변 경험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며 사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과 준비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고,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 줄 때나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청결 습관 뿐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는 영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유아를 위해 배변 지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중에 장애 영유아와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손 씻기와 휴지 사용, 물 내리기 등과 같은 청결 습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 자율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줄 아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교사가 유아를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유아가 손을 잘 씻었는지, 옷은 바르게 입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를 갈아 주면서 신체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경험을 놀이처럼 진행한다.
- 장애 영유아의 배변 훈련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부모와 의논하고, 배변 경험이 긍정적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실시한다. 배변 시 실수가 나타날 경우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차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시 장애 영유아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개별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준비 상태를 반영하여 배변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갈기와 화장실 사용에서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잘 수용하지 못하거나, 긍정적이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또한 배변 훈련 단계에 있는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를 가끔 배려하지 못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장애 영유아의 개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 배변지도가 장애 영유아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와 상호작용 없이 기저귀만 갈아주거나, 장애 영유아의 배변 실수에 짜증을 내는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3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이를 표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성별, 발달적 지체 유무,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문화, 종족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초이며, 장애 영유아가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남을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 영유아가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개별 장애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화를 나눌 때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는 것은 영유아를 존중하는 기본 태도이므로, 항상 영유아의 이름을 불러준다.
-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는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관계없이 장애 영유아를 평등하게 대하며,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교사는 주기적으로 교사의 언어, 사용하는 교재교구, 보육설비 등을 점검하여 여러 측면에서 편견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기회의 불평등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편견 교재(예: 직업 역할에서 여자 소방수, 남자 간호사를 보여주

는 책 등)가 출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내고 장애 영유아가 좋아하는 말놀이,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개별적인 관심을 보이며 장애 영유아의 불완전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는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장애 영유아의 개인적 흥미를 존중해 주고,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며, 장애 영유아를 대할 때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태도나 행동,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가끔 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강압적인 억양으로 말하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아, 너, 얘' 등으로 위압적으로 부르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무시하거나, 어떤 유아의 특정 행동을 다른 장애 영유아 앞에서 부정적인 예로 지적하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편견이 담긴 말을 하는 경우(예 :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너는 항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남아와 여아에 따라 교사의 반응이 다르거나 놀잇감을 구분해서 제공하는 경우(예 : 소꿉놀이는 여아 중심, 공차기는 남아 중심)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다.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장애 영유아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개별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며, 호기심이 왕성하여 성인에게 질문과 요구를 많이 한다.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흥미, 질문에 대해 누군가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준다면, 장애 영유아는 더 많은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개발하여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하고자 할 것이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현재 장애 영유아가 무엇을 표현하려는가를 민감하게 알아내며,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반응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항상 일관적인 태도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의문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언어적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긍정적 끄덕임, 미소, 토닥거림, 약간 놀라며 신기해하는 얼굴 표정 등 비언어적으로도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선 수용해 주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때때로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화나고, 좌절감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울음, 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우선 장애 영유아의 이러한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 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한 후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분노, 좌절,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적인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나 다른 교사와 협의하여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교사는 이를 다시 분명하게 확인한다. 장애 영유아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거나, 그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대답을 해준다. 만일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장애 영유아가 울음이나 행동(예 : 손으로 밀어내기), 얼굴 표정 등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에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파악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의 젖은 기저귀는 재빨리 갈아주고 배고픔, 졸음, 아픔 등 신체적 욕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장애 영유아의 질문이나 요구를 잘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잘 반응해 주고,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해주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교사가 가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성급한 반응이나 부적절한 반응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

일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만 부분적으로 반응하거나 요구가 많은 장애 영유아에게만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등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있는 경우이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요구를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무시하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성급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하는 것은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장애 영유아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며, 더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한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이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 보육시설의 공간과 시간, 교사와 또래의 행동, 그리고 가정 배경 등이 장애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제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 **교사는 긍정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필요할 때 대안 제시 등의 긍정적 방법으로 지도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와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하고,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하며, 영유아의 자율적인 행동을 칭찬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묻는다.
- 교사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모델이 되어야 한다.
- 가족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여 행동이 일어난 배경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대부분 긍정적인 방법으로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대안 제시 등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장애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대체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나 가끔 위협이나 비판, 소리 지르기, 야단치기 등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하는 경우, 상황, 시간대별로 교사의 지도방식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또한 교사가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위협이나 비판, 소리 지르기, 야단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강요하는 경우, 부정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체벌하거나 벌 세우는 경우, 교사가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3	교사는 나누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사이좋게 지내기, 배려하기 등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한다.
2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끔 격려한다.
1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다.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는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또래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교사는 교사와 장애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또래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격려해주며 긍정적인 모델을 자주 보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쌓기놀이 영역에서 커다란 블록을 가져올 때 한 유아가 무거워하는 것을 다른 유아가 함께 들어주는 상황이 관찰되었다면, 교사는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다가 그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여 준다. “무거운 블록을 ○○가 함께 들어주니까 △△의 기분이 어땀니?”, “○○이가 왜 블록을 함께 들어 준거야?”, “힘든 것을 ○○이가 도와줘서 △△이는 많이 고마운가 보다” 등 또래 간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함으로써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육시설에서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함께 지내는 또래에게 친밀한 관심 갖기, 긍정적 정서 표현하기, 또래와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기, 서로 배려하기, 또래를 도와주고 도움받기, 또래와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배우기 등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 준다.
- 장애 영유아가 서로 웃고, 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편지를 주고 받는 등 긍정적인 정서를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한다.
-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이들의 언어나 행동, 표정, 놀이 진행 과정 등을 잘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서로 간의 배려나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 장애 영유아가 또래보다는 교사에게만 상호작용을 시도할 경우,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교사가 일방적으로 행동을 지시하거나(예: 00이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을 △△에게 나눠 주자), 직접 교사가 해결하는 경우(예: 교사가 놀잇감을 00에게서 받아서 △△에게 준다)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게 된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끼리의 정서 표현(예: 바라보기, 미소 짓기, 웅얼이, 이름 부르기 등), 옆에서 놀기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해야 한다. 이때 교사의 말(예: 00이가 △△이 보고 웃고 있네, 00이도 웃어줄까?)이나 행동이 영유아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일과 중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사이좋게 지내기, 배려하기 등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끔 격려하는 경우이다. 또한 교사가 또래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격려하나 대부분 교사의 일방적 지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개입하지 않는 등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시킨다.
2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놀이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의 자유놀이는 매우 영향력이 강한 학습과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들의 자유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실내의 자유놀이에 참여하고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현재의 상태 및 발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의 놀이 수준을 높여 주며, 놀이를 지속하게 해주고 총체적 발달을 촉진하게 해준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자유놀이에 참여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교사는 자유놀이에 참여할 때 개별 장애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이나 흥미, 기질, 배경 등을 고려하여 그 놀이 방법이나 진행 방법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 특성이나 발달 수준을 잘 관찰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놀이가 단순히 반복되어 흥미를 잃게 되는 시점이나 다른 놀잇감이 필요할 때, 또는 놀이친구가 필요할 때, 교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놀잇감을 제안하거나 놀이 상대로 개입하여 함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놀이가 지속되고 놀이의 내용이 확장된다.
- 장애 영유아의 연령과 놀이 종류에 따라 교사의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필요할 경우 놀이 상대의 역할을 맡거나, 놀잇감을 함께 가지고 놀고, 장애 영유아가 놀이에 흥미를 잃어 갈 때 다른 놀이 내용을 제안하여 놀이를 확대하는 등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놀이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가 요구할 때에만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놀이 아이디어나 놀잇감을 제안하지만 놀이 상대로서 역할을 맡는 일이 드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사가 한두 놀이에만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놀이를 적절히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사가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놀이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관심이 없거나 놀이를 지켜보기만 하거나,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등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3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2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교사가 해결해 주거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장애 영유아끼리 다투거나 문제가 생길 때, 교사는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 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기보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장애 영유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장애 영유아 스스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삼아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 개입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객관적 중재자로서 그 문제해결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가 타인의 입장을 배우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적절히 개입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장애 영유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장애 영유아 모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신중하게 듣도록 한다.
- 교사가 상황을 판단하여 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정리하기보다 장애 영유아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 후,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나 갈등 상황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
-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가 해결을 해주면 장애 영유아는 더 이상 자신

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보다 교사에게 해결을 요청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려는 수동적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 장애 영유아 간에 다툼이 났을 경우 교사가 다툼의 원인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다툼을 종결시키고, 다투었던 두 유아를 벌세우는 등의 방법은 빠른 해결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는 “누가 이 놀잇감을 먼저 갖고 놀았니?”, “그럼 ○○가 잠시 더 갖고 놀다가 △△에게 양보하자” 등으로 교사가 장애 영유아에게 상황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교사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놀잇감 및 교구 및 교재를 마련해 주는 등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는 언어표현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적인 나누기와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평소에 잘 살피서 문제 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교사가 해결해 주거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다툼에 개입하나 장애 영유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기회 없이 교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에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

우,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파악은 전혀 하지 않고 다툼을 종결시키는 등 교사가 부적절하게 지도하는 경우 등이 가끔 있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행동에 관여하지 않아 장애 영유아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이다. 또한 다툼 장애 영유아를 벌세우는 등 교사가 부적절하게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3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활동과 경험이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2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육과정을 통해 장애 영유아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경험, 태도 등을 배우게 된다. 보육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보육과정의 목표가 달성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 영유아를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키우게 된다.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언제, 어떻게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적 판단은 장소와 시간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수법이란 교사가 어떤 의도로 언제, 어떻게 장애 영유아의 보육경험이나 활동을 이끌고자 하는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말한다. 교수법은 교사에 의해 계획된 목표에 따라 장애 영유아에게 정보를 주거나, 기술습득의 모델을 보여주는 교사 주도적 접근법과 장애 영유아 스스로의 흥미와 행동 등을 통해 그리고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는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이 있다. 교사가 이러한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지식이나, 보육현장에서 축적된 경험, 아동관, 보육신념 등과 더불어 장애 영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 흥미, 사전경험의 정도, 새로운 상황에 접근할 때의 반응방식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교수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고, 판단, 태도, 신념, 전문적 능력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교사가 보육활동을 진행할 때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활동 상황에 적합한 질문을 하고, 장애 영유아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장애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교사 주도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예로는 장애 영유아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기, 시범을 보이기, 실물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기 등이 있다. 교사 주도적 교수법을 활용할 경우라도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때때로 장애 영유아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학습경험이 전환될 수 있다.
- 교사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장애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주의집중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흥미로운 도입활동(예: 손유희 등)으로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예로는 장애 영유아가 직접 탐색하고 실험하도록 지원하기, 장애 영유아의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기,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 영유아가 어떤 개념이나 활동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배우도록 격려하기 등이 있다. 이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탐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 교사는 활동의 내용과 상황 등에 따라 교사 주도적 접근법과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보육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교수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물의 명칭을 배우는 것과 같이 장애 영유아에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이나, 찰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의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을 탐색하는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를 충분히 기다려 주고, 스스로 활동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활동과 경험이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가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활동에서 교사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는 경우, 장애 영유아에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요구되는 활동에서 교사가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가끔 있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활동에서 교사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는 경우, 장애 영유아에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요구되는 활동에서 교사가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활동을 하는 내내 통제와 지시로 일관하는 경우, 장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인 경우이다.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있는 영양이 필요하며,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다. 장애 영유아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보육시설 실내 공간의 위생과 청결은 어릴 때부터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집단생활에서 예상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몸이 아픈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는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조리된 식단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에 초점을 두고 보육시설 내의 각 공간의 청결과 위생, 장애 영유아의 위생적 생활습관 지도, 몸이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여부,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그리고 장애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청결과 위생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		○	소독 실시 기록, 대청소 실시 기록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			-
	장 5-3. 놀잇감의 청결	○			-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			-
	장 5-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			-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			-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			-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	○		-
질병 관리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	○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 응급처치동의서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	○	○	투약의뢰서, 투약일지
	장 5-11.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	○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 (공지기록), 건강검진 관련 서류, 가정통신문
급식과 간식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		○	식단표, 급식 시행 기록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		○	식단표, 간식 시행 기록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3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고, 정기적인 대청소와 소독이 이루어진다.
2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한두 군데 있거나, 대청소 또는 소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대청소 또는 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장애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 개별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려면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육활동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성인에 비해 약한 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은 물론 공유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등)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보육시설의 실내 공간은 아래와 같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보육시설의 모든 실내 공간, 즉, 보육실은 물론 공유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등)을 매일 청소하며, 청결상태도 매일 점검한다.
-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공유공간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한다.
-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과 대청소 후 관련 기록을 남기고 유지한다.
- 현관은 항상 잘 정돈되어 있고, 복도와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모든 보육실의 바닥, 창문과 창틀, 교구장, 바구니, 사물함 뒷편 구석진 곳 등도 청결상태를 잘 유지한다.
- 모든 보육실의 흥미영역에 깔려 있는 공동매트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일광 소독하여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청소도구(걸레, 빗자루 등), 보관함, 휴지통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처리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대청소가 2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곳이 한두 군데 있거나, 소독 또는 대청소가 2개월에 1회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곳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정기적인 소독 또는 대청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정기적인 소독 또는 대청소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소독과 청소가 미흡하여 해충이 발견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3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애 영유아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하여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보육실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하며,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는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 보육실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장애 영유아가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 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 등 계절에 맞게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장애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보육시설에서는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등원 전, 식사 및 간식 시간, 낮잠 시간 후 등에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보육실 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겨울철에도 자주 창문을 열어 수시로 환기를 시킨다.
- 보육실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하며,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를 부착하여 햇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보육실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 흥미영역에서 책을 읽거나 놀이 활동을 할 때에 흐릿하거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록 적절한 밝기를 유지한다.

-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 등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 보육실 외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다른 실내 공유공간(예: 유희실 등)도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보육실에서 환기, 채광, 조명, 온도가 모두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실내 환기를 자주하여 보육실에 탁한 공기가 느껴지지 않으며, 필요한 곳에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날씨와 계절에 맞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보육실 외 공유공간(예: 유희실 등)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이나 공유공간에서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즉, 실내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가 탁하거나, 필요한 영역에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날씨와 계절에 맞는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너무 춥거나 더운 경우 등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실이나 공유공간에서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장 5-3	놀잇감의 청결
3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하다.
2	놀잇감 일부가 청결하지 않다.
1	놀잇감 대부분이 청결하지 않다.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의 청결유지는 장애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보육실에서 장애 영유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은 자주 세척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지 않으면 진드기나 전염성 세균 등이 번식해 자칫하면 장애 영유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놀잇감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보육실의 놀이 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놀잇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블록이나 인형, 형겅 놀잇감, 소꿉놀이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놀잇감을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한다.
- 놀잇감의 재질에 따라 형겅으로 된 놀잇감은 자주 삶아서 세탁하고, 나무나 플라스틱 놀잇감과 블록 놀잇감의 찌든 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온 또는 자외선 살균 처리 후 건조시켜 청결하게 관리한다.
- 특히 장애 영유아가 입에 넣기 쉬운 놀잇감은 청결하지 못하면 구강염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매일 세척한다.
- 장애 영유아가 실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놀이기구(예: 이동식 및 고정식 기구)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먼지나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고 녹이 슬지 않는 등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놀잇감의 일부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놀잇감이 더럽거나 찌든 때가 보이는 경우, 녹이 슬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입에 넣고 빨기 쉬운 놀잇감이나 리코더, 멜로디언 등 입에 직접 닿는 놀잇감을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 놀잇감 중 일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놀잇감 대부분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놀잇감 중 절반 이상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3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2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나 비품 구비가 미흡하다.
1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지 않거나,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실내의 놀이 활동과 식사 전후 손을 씻는 세면장은 장애 영유아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 이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 역시 장애 영유아가 자주 사용 하는 곳으로 변기 사용 후 신속하게 뒤처리가 되지 않아 악취나 오물로 인해 세균이 번식 하여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면장과 화장실에서는 빈번하게 물을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발생하여 세균 번식을 일으켜 장애 영유아의 건강상 위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건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면장과 화장실 각각에 비치된 비품 역시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 **보육시설의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는 전반적인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관리, 변기 사용에 따른 신속한 후속 처리, 그리고 비품관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이 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과 중 수시로 확인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에는 마른 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하여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변기 사용 후 오물 내리기 등과 같은 후속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변기를 자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관리를 위해 청소 도구와 필요한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를 가는 공간과 세정 공간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세균 감염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 등)을 마련한다.
- 기저귀 갈이대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닦고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는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일회용 위생장갑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사용한 기저귀나 일회용 위생 장갑,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오물을 바로 처리하고 변기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비품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사용한 물품이 즉시 청결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비품이 항상 갖춰져 있는 경우가 우수한 수준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나 비품 구비가 미흡한 경우이다.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이 청결하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거나, 필요한 비품 중 한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 공간의 청결상태나 필요한 비품 구비가 미흡한 경우이다.

사용한 후에 기저귀 갈이대와 세정 공간을 가끔 닦지 않는 경우,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비품 중 한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이다.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 중 절반 이상 방치되어 있거나, 필요한 비품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이 없는 경우, 사용한 기저귀 갈이대와 세정공간을 자주 닦지 않을 경우,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하루 중 절반 이상 방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장 5-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3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2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 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 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조리실은 장애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이 준비되는 곳이므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조리실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매일 청소와 소독을 하며, 자주 환기하는 등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조리실의 온도는 21~22도, 습도는 30~79%가 적당하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냉장고와 개수대, 조리대, 조리실 비품과 식기류 등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 컵이나 우유병 등을 먼지나 습기가 없는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장애 영유아가 전염성 질병(예: 배탈, 설사, 구내염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리실 공간 및 설비, 비품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조리실 바닥, 벽 및 천장 등 전반적인 조리실 공간에 대한 청결관리 및 환기가 매일 잘 이루어진다.
- 조리실의 개수대 및 바닥 하수구에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한다.
- 조리실의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등에 찌든 때가 없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한다.
- 조리실의 냉장고는 내부를 정리정돈하며, 음식물이나 때가 냉장고 안팎에 묻어 있는지 매일 확인하여 세제와 물로 잘 닦은 다음 소독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 조리대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참고사항

- 세균 번식이 쉬운 도미는 생식품용과 조리된 식품용, 채소용과 고기용 도미를 서로 분리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하나의 식칼로 생선, 육류, 채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다루게 되면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재료를 육류, 어패류, 채소, 조리완제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칼을 사용하고, 사용 후 위생적으로 소독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행주는 용도에 따라 조리용, 기구용,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후, 매일 살균처리하여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펀지, 양면 수세미도 물을 잘 흡수하여 세균을 증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반드시 건조시키며, 소독은 소독세제에 30분 이상 담가 둔 후 끓는 물로 행구어 햇빛에 건조시켜 말려야 한다.

- 식기류(예: 접시, 식판, 수저 등)는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 장애 영유아용 물 컵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 장애 영유아용 개별 컵을 준비하거나, 청결한 컵을 여러 개 비치하고,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장애 영유아가 물을 마실 때 같은 컵을 쓰지 않도록 한다.
- 수유가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 항상 소독이 된 청결한 상태의 우유병과 젓꼭지를 사용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개인용 물 컵, 우유병 포함)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개인용 물 컵, 우유병 포함)의 청결과 위생관리에서 한두 가지 정도 미흡한 경우이다. 즉 조리실이 더럽

거나 환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급식설비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주방 가전제품에 찌든 때가 있거나 식기류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도마, 칼 등 조리도구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행주가 더러운 경우, 장애 영유아용 물 컵(영아인 경우 우유병)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 한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조리실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과 위생관리에서 세 가지 이상이 미흡한 경우이다.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3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간식은 시설 내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의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식자재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유통기한 내 사용하며, 식자재 보관 요령을 준수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조리 과정과 배식 과정 모두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단체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성장과 건강 유지가 가능하다. 보육 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원할 때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곳에 마실 물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모유나 우유를 관리하는 과정도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 바람직한 식자재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모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소비기한, 식품구입날짜 등을 표기한다.
- 각 식재료별 보관 방법을 확인 후, 그에 맞게 냉장, 냉동, 실온 보관하며, 선입선출을 지킨다.
-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하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식품이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한다.
- 장애 영유아가 마실 물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 꼭지와 필터는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를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참고사항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앞치마, 머릿수건,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한다.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으며, 작업 시 맨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생장갑을 사용한다(맨손 조리 허용 작업 : 채썰기, 찢기, 껍질 벗기기, 과일 전처리).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귀걸이, 반지, 매니큐어 등을 착용하고 조리할 수 없으며, 조리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의 상처 등).
- 식재료 준비 작업 후 싱크대를 세척, 소독한 후 조리작업을 실시한다.
-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식중독균을 완전 사멸시키거나 안전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열 온도로 조리해야 한다.
- 육류, 가금류, 어패류 등을 가열처리할 때 중심부가 완전히 가열되었는지 확인하고 음식을 수시로 저어 음식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생적으로 배식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간식 전후로 사용하는 식탁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교사는 각각의 음식마다 집게 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배식관리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식자재(식수, 모유, 우유 포함),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식자재(식수, 모유, 우유 포함)나 조리 및 배식 과정에서 한두 가지가 미흡한 경우이다. 즉 식자재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한 경우, 조리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한 경우, 배식 과정 중 하나의 식기도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거나,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배식하는 경우, 급·간식 전에 식탁을 닦지 않아 청결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을 보육실 바닥에 그냥 내려놓거나 배식하려는 음식을 상온에 오래 노출하는 경우,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는 경우, 교사가 사용하던 수저로 추가 배식을 하는 경우 등 이 중에서 한두 가지가 해당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식자재(식수, 모유, 우유 포함)나 조리 및 배식 과정에서 세 가지 이상 미흡한 경우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및 재료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3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유지를 한다.
2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는 자주 손을 씻음으로써 각종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이나 실외놀이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손은 먼지와 세균에 오염되기 쉽다. 따라서 화장실 사용 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놀이 후 등과 같이 자주 손을 씻는 것은 장애 영유아가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한 일과 안에서 교사도 장애 영유아와 함께 자주 손을 씻어 장애 영유아를 위생적으로 보살피고, 청결한 생활습관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장애 영유아가 청결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점심식사 이후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반드시 이 닦기를 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청결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올바른 이 닦기 방법을 장애 영유아에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칫솔도 세균이 전염되거나 번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반드시 이 닦기와 손 씻기를 해야 하는 경우와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이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교사는 출근한 후, 장애 영유아의 배변 지도(기저귀 갈이) 후, 식사(수유) 및 간식 전후, 실외활동 후, 투약하기 전, 장애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점심 식사 이후 이를 닦아야 한다.
- 보육시설과 보육실 내 설치된 화장실에 장애 영유아가 바르게 손을 씻는 순서와 이 닦는 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하여(예: 그림판) 장애 영유아 스스로가 올바르게 손

을 씻고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칫솔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가 나기 전의 장애 영아는 수유 후 가제 손수건에 끓였다 식힌 물을 살짝 적셔 잇몸을 닦아 주며, 이가 나기 시작하면 손가락 칫솔 등에 영아용 치약을 묻혀 잇몸을 마사지하고 이를 닦아준다.

💡 영유아가 손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할 때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먹기 전(손 씻기)
후	<p><손 씻기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변 이후 • 실외활동 • 애완동물을 만짐 • 손이 더러워 보임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짐 <p><이 닦기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식사 이후

💡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할 때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다루거나 먹고, 마실 때 • 영유아에게 음식을 먹일 때 • 투약(특히 안약)을 할 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한 후 • 변기 사용, 기저귀 갈아 줌, 유아의 변기 사용을 도와줌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짐 • 쓰레기통 사용 • 실외활동 • 애완동물을 만짐 • 익히지 않은 육류와 가금류를 만짐 • 손에 낀 일회용 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벗음 • 손이 더러워 보임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와 장애 영유아 모두 배변 지도 후, 식사와 간식 시간 전, 실외활동 후 등 필요한 때에 반드시 손을 씻으며, 식사 후에 모든 장애 영유아가 이를 닦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교사와 장애 영유아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화장실을 사용한 후, 식사와 간식 시간 전, 실외놀이 활동 이후, 투약 전 등 손을 씻어야 할 때 손을 씻지 않거나 일부 장애 영유아가 점심식사 이후 이를 닦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손 씻기와 이 닦기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이다. 즉 교사와 장애 영유아가 반드시 손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할 때 씻지 못하고 닦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손 씻기와 이 닦기에 대한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3	장애 영유아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 등을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침구의 청결상태가 미흡하다.
1	장애 영유아가 공동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잠자리 위생은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된다. 장애 영유아가 침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서로 전염성 균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 영유아는 각기 자신의 베개 및 이불(개별 침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침구의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써놓을 필요는 없으나, 보육시설에서 단체로 맞춘 침구는 개별 장애 영유아가 각각 자기 침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개별 침구의 세탁은 가정 또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모가 가정에서 세탁하는 경우 교사는 청결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구의 위생적인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는 개별 침구(베개와 이불)를 사용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땀, 침 등 분비물, 대소변 등으로 침구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개별 침구 및 요 등은 주 1회 이상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개별 침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낮잠을 자지 않는 유아반에서 아픈 유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여분의 침구는 사용할 때마다 시트를 교체하거나, 사용하고서 세탁한 후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 영유아용 개별 침구는 너무 폭신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각 침구가 청결한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나, 침구의 청결상태가 미흡한 경우이다. 즉 개별 침구에 오물 등이 묻어있어 지저분하거나, 놀이 매트를 그대로 침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모든 영유아의 개별침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 침구(이불이나 베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여분의 침구를 사용한 후 세탁하지 않고 다른 영유아가 사용하는 경우나 공동 요를 사용하면서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도 공동 침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3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한다.
2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1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들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 장애 영유아가 아픈 경우에는 일상적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를 양호실이나 조용한 곳에 격리시켜 보호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또한 응급처리가 필요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미리 준비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송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 **보육시설에서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육시설의 방침과 절차(예: 응급처치동의서 등)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응급처치동의서 내용에는 보호자의 비상연락망, 의료기관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 응급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약품(혹은 구급상자)을 구비한다.
- 약품 종류별 사용(유효)기한을 표기한다.
- 응급처치 및 구급상자와 관련된 내용은 보육시설 응급처치 매뉴얼(중앙보육정보센터, 2009)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급상자에 갖추어야 할 내용물

의료용 재료	외용제	주의 사항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장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보육시설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장 상황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말 것
-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은 금할 것
-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것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알릴 것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다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할 것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경우이다. 즉 아픈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의 방침(예: 응급처치동의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교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유효)기한이 명시된 비상약품을 구비하여 잘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의 방침(예: 응급처치동의서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 내용이 누락되어 절차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일부 장애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가 누락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의 방침(예: 응급처치동의서, 투약의뢰서 등)의 주요 내용이 누락되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투약의뢰서 없이 약을 먹이는 등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없는 경우나 응급처치동의서가 영유아의 절반 이상 누락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육시설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이 있거나 사용(유효)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약품이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3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1	투약의뢰서나 투약일지가 없다.

장애 영유아는 상시 복용하는 약물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투약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반드시 서면으로 투약을 의뢰, 요청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약 후 이상 반응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투약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아픈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보육시설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예: 투약일지)을 유지한다.
- 투약의뢰와 보고 내용에는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시간, 의뢰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투약의뢰는 알림장, 대화수첩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상온, 냉장보관 등 보관 방법에 적절하게 보관되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에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관리(복용여부, 시간, 횟수, 복용량, 효과관찰 등)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이다.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의 기록이 미흡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투약의뢰서나 투약일지가 없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이다.

장 5-11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3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나,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하다.
1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유아기는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시기로 보육시설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가 전염성 질환에 걸릴 경우 이를 다른 장애 영유아에게 쉽게 전염시킬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모든 장애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예: 수두, 볼거리, 홍역, 수족구, 독감, 뇌염 등)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전염성 질환의 종류와 기간,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가정통신문, 게시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 건강검진 실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장애 영유아나 종사자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문서화한다.

■ **보육시설의 모든 장애 영유아 및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설장은 보육하고 있는 모든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정기검진 시 누락된 신규 입소 원아도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 검진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는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소아과 전문의 확인 필)를 비치하도록 한다.
 - 영아(만 0~1세, 2세) :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확인 서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 시설장은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참고)을 안내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준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 참고사항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 제4항 및 「별표4」)
 - 검사항목 : ①문진과 진찰 ②신체계측 ③발달평가 및 상담 ④건강교육 ⑤구강검진
 - 검진주기 : 총 6차에 걸쳐 검진
 - ①생후 4~6개월 ②생후 9~12개월 ③생후 18~24개월 ④생후 30~36개월
 - ⑤생후 42~48개월 ⑥생후 54~60개월

검사항목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	○	○	○	○	○
신체계측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	○	○	○	○
	영양	○	○	○	○	○
	수면	○				
	대소변 가리기			○		
	정서 및 사회성교육				○	
	개인위생					○
	구강		○			
	취학준비					
구강검진			○		○	○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모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에게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항목에 준하여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안내(예 : 가정통신문 등)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나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한 경우이다. 즉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이 문서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여 종사자와 부모가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 마련된 대책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장애 영유아나 종사자가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사후 조치에 대한 방침이 분명하지 않아 격리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일부 종사자 및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항목에 준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즉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전체 장애 영유아의 절반 이상 누락된 경우 등이다.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고, 식단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된다.
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 형태가 미흡하다.
1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 형태도 미흡하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는 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성장기 장애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급·간식 계획에 따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장애 영유아의 편식을 방지하고, 변화 있는 다양한 식단으로 식욕을 돋우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 바람직한 급식을 위한 식단 구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식단표(급식)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식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 급식은 쌀과 감자, 식빵, 국수 등의 탄수화물 식품, 육류 생선, 계란, 콩류의 단백질 식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의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 식품들이 골고루 제공되어야 한다.

- 양질의 식자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리 형태로 식사를 준비하여 장애 영유아의 편식을 방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식사 조리 형태는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하도록 하고, 음식 조각이 크지 않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회 조리되어 배식된 음식이 남을 경우,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재배식하지 않도록 한다.
- 장애 영유아를 위해 이유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자재를 사용하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별도로 계획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유식은 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형태와 크기로 조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식단이 영양적 균형을 이루고, 다양한 형태로 조리되는 경우이다. 급식 계획에 따라 영양상 균형을 고려한 양질의 식품이 제공되며, 식품과 조리 방법이 다양하다. 또한 급식 계획과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잘 갖추어져 있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형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이다. 즉 급식 제공에서 영양적 균형이 맞지 않거나, 음식 조리 형태가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다양한 조리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등의 경우이다. 또한 급식이 계획된 식단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형태도 미흡한 경우이다. 즉 급식제공에서 영양적 균형이 맞

지 않고 음식 조리 형태가 발달 단계나 장애유형에 적합하지 않거나, 조리 절차가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이다. 또한 식단표가 없거나, 제공기록이 없어서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식단표는 있으나 급식이 계획대로 제공되지 않는 때가 절반 이상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3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된다.
2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계획되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된다.
1	간식이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계획되어 있거나, 주로 인스턴트식품이 제공된다.

보육시설에서의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열량 보충과 영양의 균형 차원에서 중요한 일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간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능한 식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과 양이 식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되어야 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 바람직한 간식을 위한 식단 구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전에 수립된 간식 식단표에 따라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 등의 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간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간식은 장애 영유아의 신체적 요구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 제공해야 한다.
- 간식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가 바람직하며,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예: 생과일, 샐러드, 찐감자 등) 주 3회 이상 제공한다.
- 식품 첨가물(예: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가능한 간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간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능한 식사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전 간식의 경우에는 죽이나 간단한 식사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식품이 주 3회 이상 제공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 수준(2점)은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계획되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이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이다. 간식이 계획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간식을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계획하고 있거나, 식품 첨가물(예: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 과자류 위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또한 식단표가 없거나, 제공 기록이 없어서 장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간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간식이 계획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보육시설에 장애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나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장애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은 장애 영유아로 하여금 보육활동에 마음 놓고 참여하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안정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장애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는 실내의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여 장애 영유아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보육환경에는 시설 및 설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시설장과 교사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의 일과 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설장과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며, 또래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성인의 보호 하에 있도록 하며, 장애 영유아를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 모두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과 사고를 예방하는 지식 및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영역의 평가에서는 실내외 시설의 안전과 장애 영유아의 안전보호에 초점을 두고 보육실, 실내 및 실외 시설의 안전관리, 위험한 물건의 보관 등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지,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인계되고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	항 목	평가방법			
		관 찰	면 담	문 서	확인자료
실내외 시설의 안전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		○	모든 보육실의 안전점검 기록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		○	실내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기록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		○	실외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기록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		○	놀잇감의 안전점검 기록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장애 영유아의 안전 보호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	○	○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귀가 동의서
	장 6-8.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	○		○	차량안전수칙, 차량의 안전점검 기록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	비상시 대처방안(비상대피도, 대피요령, 종사자 역할분담)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안전교육, 소방훈련 실시 기록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3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진다.
2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거나,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1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어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교사는 보육실의 시설과 설비를 매일 점검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안전지침을 게시하며, 누적된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창문 보호대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을 짧게 정리하여 장애 영유아의 팔이나 목이 휘감기거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한다.
- 보육실 내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를 덮고, 전선줄 등이 길게 늘어져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보육실 내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은 적절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 교구장은 장애 영유아가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정적으로 놓여 있으며,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가능한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 보육실 내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장애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육실의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여 장애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고르게 설치한다.
- 보육실 내부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며,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보육실의 시설·설비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고, 매일 모든 보육실마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모든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보육실별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 두 가지 있거나,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실 내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반이 있거나, 각 보육실별 구분 없이 한 장의 점검표로 이루어지는 경우, 점검표가 없어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3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2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거나, 정기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육시설에는 보육실을 제외한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유희실(실내놀이터 포함), 조리실 등의 실내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실내시설 및 설비는 안전하게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시설장과 교사는 실내시설 및 설비가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보완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실내시설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보육시설의 현관문은 장애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도록 개폐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창문 보호대나 난간을 설치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을 짧게 정리하여 장애 영유아의 팔이나 목이 휘감기거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한다.
- 보육시설 내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를 덮고, 전선줄 등이 길게 늘어져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보육시설 안전을 위해 전기공급 개폐기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육시설 내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가스밸브 등은 적절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

꼬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 복도나 유희실 등에 설치된 수납장은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 복도나 계단, 유희실 등의 벽에 설치된 게시판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유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볼풀장 등)는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다.
- 식당이나 복도 등에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장애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보육시설의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바닥은 장애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다.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 등을 통해 조절하여야 한다.
- 조리실이나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 보일러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 장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보육시설 실내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며,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실내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 중’ 등의 표시를 붙인 후,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실내시설 및 설비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실을 제외한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 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내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거나, 정기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횟수가 월 1회 미만인 경우, 안전점검의 내용이 미흡하여 형식적인 경우(예: 실내시설 및 설비 중 일부가 안전점검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실제 시설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개선을 요하는 시설물이나 실내 환경에 대해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은 상태이기는 하나 즉시 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실내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안전점검표가 없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3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2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거나, 정기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외시설 및 설비란 보육시설 건물의 외부에 있는 모든 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문, 울타리, 마당, 옥외놀이터, 옥상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를 포함하여 놀이터에 설치된 고정식 놀이기구(예: 그네, 미끄럼틀, 매달리기 기구 등)과 기타 실외의 부대시설을 의미한다. 실외시설 및 설비는 장애 영유아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관련 규정(영유아보육법·보육사업안내 등)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교사는 실외시설·설비가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할 때는 사용불가 표시를 하여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한 후 즉시 수리하여 장애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실외시설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보육시설의 실외시설은 대문, 출입구, 울타리, 담장 등을 통해 외부와 충분히 분리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가 쉽게 나갈 수 없고, 동시에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 없다.
- 옥외놀이터의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 등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 보육시설 건물의 외부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장애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장애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안전덮개를 덮어야 한다.
- 보육시설의 축대는 안전하고, 맨홀 뚜껑은 잘 덮여 있으며, 웅덩이, 요철, 녹슨 부분, 감전위험물 등이 없다.
- 보육시설 내 마당이나 구석 등에는 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는 적재물(목재더미, 파

손된 가구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나 무게를 가진 물건일 경우 임. 삽이나 시멘트 포대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없도록 하거나, 있을 경우 장애 영유아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의 실외놀이 시 놀이공간에 차량 접근을 차단한다.
- 실외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 중' 등의 표지를 붙인 후,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실외시설 및 설비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 중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거나, 정기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횟수가 월 1회 미만인 경우, 안전점검의 내용이 미흡하여 형식적인 경우(예 : 실외시설 및 설비 중 일부가 안전점검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실제 시설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개선을 요하는 시설물이나 실외 환경에 대해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막은 상태이기는 하나 즉시 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안전점검표가 없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3	보육시설 실내외의 모든 놀잇감에는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진다.
2	보육시설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거나,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1	보육시설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내외 놀잇감이란 모든 보육실, 유희실(실내놀이터 포함), 다목적 활동실, 옥외놀이터 등에 있는 ‘이동 가능한 놀잇감’을 의미한다(미끄럼틀, 볼풀장 등과 같은 고정식 놀이기구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에 해당). 실내외의 놀잇감은 위험요인이 없어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놀잇감을 장애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도록 안전한 것으로 구입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의 놀잇감을 매일 점검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수리,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실내외 놀잇감을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놀잇감은 유해색소가 첨가되거나 유해색소로 표면이 도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천장이나 벽에 모빌 등을 부착한 경우, 장애 영유아가 잡아 당겼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끝이 깨진 사기그릇, 안전 처리되지 않은 강통 등은 위험하므로 놀잇감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조개껍데기와 같은 식물자료를 제시한 경우 깨지거나 날카롭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내외 놀잇감에 파손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후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실내외 놀잇감에 맞게 안전점검표가 만들어져 있고,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실내외 놀잇감에 대한 안전점검은 모든 보육실, 유희실, 옥외놀이터 등 주요 장소 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 실내외 모든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시설 실내외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 두 가지 있거나,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놀잇감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가 있거나, 각 장소별 구분 없이 한 장의 점검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 실내외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안전점검표가 없어 안전점검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3	실내외 위험한 물건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호기심이 강한 장애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위험한 물건에 접근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모든 종사자가 보육시설의 실내외를 철저히 살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장애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실내외 위험한 물건을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 위험한 물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등 작업 시 찌르거나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실험용 알코올, 살충제, 방향제, 구강세정제, 액상비료, 어항수질 개선제, 물고기 사료, 각종 스프레이, 성인용 화장품, 놀잇감으로 제시된 내용물이 들어있는 화장품(립스틱, 매니큐어 등), 유리조각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대걸레, 고무장갑,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빗자루, 삽 등 장애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비상약품함, 장애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만지면 다칠 수 있는 가시가 있는 식물(예: 선인장, 장미, 밤송이 등)
 - 장애 영유아가 삼킬 수 있는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예: 블록이나 구슬),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

- 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예: 콩, 팥, 은행, 도토리 등)
-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 스테이플러, 펀치, 목공용 본드, 칼날이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과 같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애 영유아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비상약품, 투약을 위해 장애 영유아가 가지고 온 약 등은 성인의 지도 하에 사용되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의 실내외에 위험한 물건이 없거나,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시설의 실내외에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의 실내외에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3	교사는 실내외에서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
2	교사는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 외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모든 장애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장애 영유아는 일과 중 항상 성인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하며,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실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항상 주시하여 장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보육실의 환경은 교사가 모든 장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도 가능한 교사가 모든 장애 영유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기둥 뒤나 계단 밑과 같이 구석진 곳은 장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는 보육실이나 실내외 놀이터 등에서 가능한 많은 장애 영유아가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다.
- 교사는 일부 장애 영유아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기적으로 전체 장애 영유아를 살펴보는 등 전체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여야 한다.
- 장애 영유아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보육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장애 영유아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살펴봐야 한다.
-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남겨두고 일정 시간 이상 보육실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워야 한다.

- 산책이나 일상생활 관련 활동 등을 위해 장애 영유아와 함께 보육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모든 장애 영유아가 교사의 보호 하에 있도록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교사가 실내외에서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전체 장애 영유아이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보육시설 실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 수준(2점)은 교사가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 외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전체 장애 영유아를 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만 몰두하여 보육실 실내외에서 상황을 관찰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 경우, 혼자 화장실에 간 유아가 돌아오지 않아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등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교사가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이다. 즉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주시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여 교사의 시선을 벗어난 장애 영유아가 있는 경우, 보육실이 구조적으로 전체 장애 영유아를 주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교사가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경우, 교사가 실내외 전체를 주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장애 영유아가 교사의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 등이 하루 일과의 절반 이상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낮잠 시간 동안에 교사가 나가서 다른 업무를 보거나, 장애 영유아가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가는 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는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3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킨다.
2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
1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안전사고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인적 환경이 미비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귀가할 때 혼잡한 틈에 안전사고(예: 미아, 유괴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귀가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장애 영유아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에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를 확인하고 장애 영유아를 인계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자체 규정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한다. 가령, 보호자가 장애 영유아를 직접 데리고 보육시설을 오는 경우와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 영유아를 등하원시키는 경우에 따라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장애 영유아를 인계하며, 심지어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일지라도 장애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잘 수립하도록 한다.
- 모든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귀가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장애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과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 등이 있다.
- 모든 장애 영유아(차량 이용 장애 영유아 포함)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되,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전화나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장애 영유아 귀가 시 인계 과정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키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 수준(2점)은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자체 규정에 주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일부 장애 영유아의 귀가동의서가 없거나 귀가동의서의 주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 확인하지 않는 등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을 지키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혼자 등하원하는 장애 영유아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 6-8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
3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행하며, 차량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2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1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예. 등하원, 견학 등) 안전설비를 갖추고 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에서 안전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운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15인승 이상 버스운전자는 대형운전면허를 소지),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있는 성인(시설장, 교사 등)이 동승한다.
-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다.
-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에 따라 보호장구를 필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장애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개별 안전띠를 맨 것과 차량에서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킨다.
- 운전자는 장애 영유아가 안전하도록 서행하며,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운행 중 장애

영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장애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거나 옷자락이 끼거나 밟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비가 올 때는 유아가 우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 차량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행하며, 차량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경우이다. 즉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며, 운행 시 성인이 동승하고, 모든 탑승자가 개별 안전띠를 하고 차량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운행을 하는 경우가 우수한 수준에 해당한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차량의 안전설비와 안전 운행 및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가령 차량 내 소화기나 구급상자가 없는 경우, 있어도 관리되지 않는 경우, 차량 안전점검을 매일 하지 않거나, 차량 안전수칙이 없는 경우, 탑승자(운전자, 동승한 성인, 모든 장애 영유아)의 일부가 개별 안전띠(장애 유형에 따른 보호장구)를 하지 않는 경우 중 한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차량의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차량에 운전자 외에 다른 성인이 동승하지 않는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보호장구를 필착해야 하는 장애 영유아가 탑승하지만 보호장구가 전혀 없는 경우, 차량을 운행하나 현장관찰 시 차량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3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있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보육시설에 갖추어진 안전설비와 비상 시 대처방안, 종사자의 대처 능력은 화재나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에는 비상 시 대처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시설장과 교사 등 종사자들이 평소 이를 숙지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각종 대비시설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은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다(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소화설비 : 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 ※ 보육시설 내 가스시설(예: 가스렌지, 가스보일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설비 :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

위의 내용 중 보육시설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며,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한다.

-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소화기 내용물이 굳어 있거나,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상구를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 보육종사자는 대비시설과 설비를 바르게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습 등을 통해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보육시설에는 비상 시 대처방안(비상대피도, 대피요령, 종사자의 역할분담표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 비상 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소방서, 구조대, 파출소,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응급 전화를 걸 때 말해야 할 주요 내용(간략한 사고 내용, 보육시설의 이름과 위치 등), 이외 비상 시 연락해야 할 보육시설 종사자의 비상연락망, 보호자의 연락처 등이 전화기 옆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잘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소화기 내용물이 굳어 있거나 비상구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경우, 비상 시 대처방안 중 일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서 한두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소화기가 없거나, 비상구가 없는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및 설비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는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3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거나,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1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육 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장애 영유아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식과 행동요령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안전 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안전교육과 정기 소방훈련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에서는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장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한다.
-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등이 있으며, 이외 안전한 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장애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는 장애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장애 영유아가 보다 쉽게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설장은 장애 영유아의 안전교육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안내하며, 희망하는 보호자가 안전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외 비정기적으로(불시) 다양하게 훈련을 실시하여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영유아의 소방(비상대피) 훈련 시에는 성인들이 손을 잡고 도와주거나, 잘 걷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성인이 안고 정해진 대피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에게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불시훈련 포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이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우수' 수준(2점)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거나, 소방훈련이 월 1회 미만인 경우이다.



미흡한 수준

이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1점)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소방훈련이 월 1회 미만인 경우이다. 장애 영유아나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소방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V. 부 록

[부록 1] 자체점검보고서 예시(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부록 2]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연락처



자체점검보고서 예시(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보육시설 정보

보육시설 ID					보육시설명							
자체점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설립유형		
시설특성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영아전담 <input type="checkbox"/> 장애아전담 <input type="checkbox"/> 장애아통합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통합 <input type="checkbox"/> 시간연장형 <input type="checkbox"/> 휴일보육 <input type="checkbox"/> 24시간											
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원	<input type="checkbox"/> 미지원	농어촌특례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정원 /	현원	/			

■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구분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인원수	<input type="text"/> 명								

■ 보육시설 종사자 정보

구분	이름	총 보육경력	현 시설 임용일자	자격구분	최종정기건강검진일자
시설장	<input type="text"/>	년 개월		<input type="text"/>	
보육교사	<input type="text"/>	년 개월		<input type="text"/>	
추가	<input type="text"/>	년 개월		<input type="text"/>	
기타 종사자	<input type="text"/>	년 개월		<input type="text"/>	
추가	<input type="text"/>	년 개월		<input type="text"/>	

■ 보육시설 현원 정보

구분	반명	연령	영유아수	교사수
추가				
1	<input type="text"/>	만 <input type="text"/> 세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2	<input type="text"/>	만 <input type="text"/> 세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3	<input type="text"/>	만 <input type="text"/> 세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입력) 요령

1. 항목별 수준 및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작성

-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항목별로 우수한 수준(3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 미흡한 수준(1점) 중 해당란에 합니다.
-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자 이내)
 -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여 수정·보완 및 개선된 점을 기록하시거나 개선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 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우수 (3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유지를 한다.	
부분적 우수 (2점)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보육시설의 특징 및 장점(1,500자 이내)
 - 우리 보육시설의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시설의 물리적·인적 환경의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 기본사항 확인

-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 중 기본항목에 대해 양호(1점), 미흡(0점)의 해당란에 합니다.

<예 시>

연번	항목	평정	평정기준	확인결과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양호 (1점)	보육시설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1별표 1참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호
		미흡 (0점)	보육시설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1별표 1참조	<input type="checkbox"/> 미흡

3.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상기 모든 내용은 심의 시 점수에 반영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지표 영역별 점수프로파일
 - [제출완료]전 평가인증지표 영역별 점수프로파일을 살펴보고, 우리 보육시설에서 입력한 자체점검보고서의 총점 및 영역별 점수와 평가인증 기준 점수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완료]전 [미리보기/출력하기] 클릭 후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오류 체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때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저장하고 이전 이동]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제출완료] 클릭 후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완료 확인방법
 - 자체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된 경우, [나의상태]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완료]로 자동 변환됩니다.
 - 제출완료된 최종 자체점검보고서는 [자체점검] 클릭 후 [보고서 보기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 약 서

_____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평가인증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자체점검보고서는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로 구성된 자체점검위원회에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체점검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후 현장관찰자의 보육시설 방문에 동의하며 현장관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자체점검위원회	이 름
시 설 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위의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설장명 : 0 0 0

■ 기본항목 : 7항목

연번	항목	평점	평정기준	확인결과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양호 (1점)	보육시설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미흡 (0점)	보육시설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2	보육실의 설치기준	양호 (1점)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시설(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은 구별 적용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미흡 (0점)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3	종사자 배치기준	양호 (1점)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미흡 (0점)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4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	양호 (1점)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미흡 (0점)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종사자가 있는 경우	
5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 (1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에 · 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 · 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미흡 (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6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양호 (1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 반사항,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보육시설, 대표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민원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미흡 (0점)	1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및 식품위생법 관련 위 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유아보육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시설, 대표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시 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7	비상대피시설 설치	양호 (1점)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보육시설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미흡 (0점)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 은 경우 - 보육시설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 영역 1. 보육환경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1-1. 활동영역의 배치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가 적절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공간이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 발달 특성,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두 영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공간이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장 1-2. 보육실 내 장애 영유아의 휴식 공간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은 있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
장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옥외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옥외놀이터는 없으나 대체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대체놀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놀이기구가 3종 미만이다.
장 1-4.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발달에 적합한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장 1-5. 신체활동 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신체(대소근육)활동 자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대근육 활동자료나 소근육 활동자료가 거의 없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1-6. 언어활동 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언어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언어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7. 자연탐구활동 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자연탐구(수과학)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수활동 자료나 과학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8. 예술활동 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음악·동작활동 자료나 미술활동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9.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역할놀이 자료나 쌓기놀이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10. 장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장애 영유아 수에 따라 충분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만, 장애 영유아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자료가 거의 없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1-11.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육진단과 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가 거의 없다.
장 1-12.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있으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할 장소나 자료실이 별도로 없고, 자료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장 1-13. 교사를 위한 공간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있고,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은 있으나, 별도의 공간은 없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이 없다.
장 1-14. 교사용 참고자료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용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용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 영역 2. 운영관리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2-1. 보육시설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안내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장 2-2. 원아에 대한 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아에 관한 문서 관리가 미흡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원아에 관한 문서가 거의 없다.	
장 2-3.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모든 반에서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 이내이나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반이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이 초과 보육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반이 있다.	
장 2-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간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며, 팀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2-5. 종사자의 근로계약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시설장이 모든 종사자에게 알려준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시설장이 모든 종사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이 없거나, 시설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2-6. 시설장과 교사의 업무수행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시설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교사회의를 월 2회 이상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시설장과 교사가 업무 분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교사회의를 월 2회 미만 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시설장과 교사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회의를 월 1회 미만 한다.	
장 2-7. 종사자의 교육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는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미흡하거나,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가 다양한 재교육을 받지 못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시설장이나 교사가 있다.	
장 2-8.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장 2-9.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가정과의 의사소통 및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와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2-10.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보육실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하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2-1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설운영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부모에게 안내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나, 부모에게 안내하지는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제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	
장 2-12. 지역사회와의 협력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가끔 이루어진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2-13.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은 장애 영유아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없으며, 개별 장애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	

■ 영역 3. 보육과정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이 장애 영유아의 연령, 흥미,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계획안은 구체적이거나, 연령, 흥미, 계절 등의 고려가 미흡하여 연계성이 적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계획안이 없거나 있어도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도 없다.	
장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이 한두 가지 활동에 치우쳐 계획되어 있거나,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이 주로 대집단 활동이나 일상적 양육이 대부분이다.	
장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매일 2시간 30분 이상이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30분 미만이거나, 한두 영역의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이다.	
장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실외활동 시간이 주 1회 이상이고, 다양한 실외활동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실외활동이 월 2~3회이거나, 한 가지 활동으로만 이루어진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실외활동이 월 1회 이하이다.	
장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구분하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일과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일과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으로만 나누어져 있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3-6. 사회적응 프로그램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자주 제공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가끔 제공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장 3-7. 보육과정 평가 및 장애 영유아 활동 관찰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과정을 평가하지 않거나, 개별 장애 영유아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3-8. 신체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대소근육)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대근육 활동이나 소근육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3-9. 언어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언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예절과 질서, 규칙 지키기, 정리정돈 등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럽게 보육과정에서 제공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가끔 하거나, 활동을 하더라도 교사 지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기본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3-11. 사회성 증진 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자주 제공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가끔 제공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사회성 증진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다.
장 3-12. 자연탐구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 활동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연탐구(수과학) 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수확동이나 과학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3-13. 예술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자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예술(음악동작, 미술)활동을 가끔 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음악동작활동이나 미술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가 자주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과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가 가끔 이루어진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역할놀이나 쌓기놀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3-15. 교육진단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정확한 교육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가 장애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자율성을 격려하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가 집단 배식 및 급식에만 열중한다.	
장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낮잠 시간을 마련하여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낮잠 시간은 있으나,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나 개별적인 낮잠 습관 중 한 가지를 배려하지 못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낮잠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배려하지 못한다.	
장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기저귀 갈기, 화장실 사용 시 장애 영유아가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개별적 상호작용을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긍정적인 배변 경험을 위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장 4-4.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장 4-5.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긍정적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나누기, 협동하기, 도와주기, 사이좋게 지내기, 배려하기 등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끔 격려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거의 격려하지 않는다.	
장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시킨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놀이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장 49.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원인을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교사가 해결해 주거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교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장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활동과 경험이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영역 5. 건강과 영양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5-1. 실내 공간의 청결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고, 정기적인 대청소와 소독이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한두 군데 있거나, 대청소 또는 소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공간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대청소 또는 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조절 중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5-3. 놀잇감의 청결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하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놀잇감 일부가 청결하지 않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놀잇감 대부분이 청결하지 않다.	
장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상태나 비품 구비가 미흡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화장실과 세면장이 청결하지 않거나,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장 5-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의 청결상태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5-7. 장애 영유아와 교사의 청결유지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와 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유지를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와 교사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 5-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 등을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침구의 청결상태가 미흡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가 공동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	
장 5-9.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의 보호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아프거나 다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지 않는다.	
장 5-10. 장애 영유아의 투약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투약의뢰서와 투약일지가 있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투약의뢰서나 투약일지가 없다.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5-11.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나,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 영유아와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5-12.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고, 식단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 형태가 미흡하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 형태도 미흡하다.
장 5-13.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간식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계획되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간식이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계획되어 있거나, 주로 인스턴트식품이 제공된다.

■ 영역 6. 안전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거나,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거나, 정기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거나, 정기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6-4. 실내의 놀잇감의 안전관리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실내외의 모든 놀잇감에는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진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거나,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실내외의 놀잇감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 6-5. 실내의 위험한 물건의 보관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실내외 위험한 물건은 장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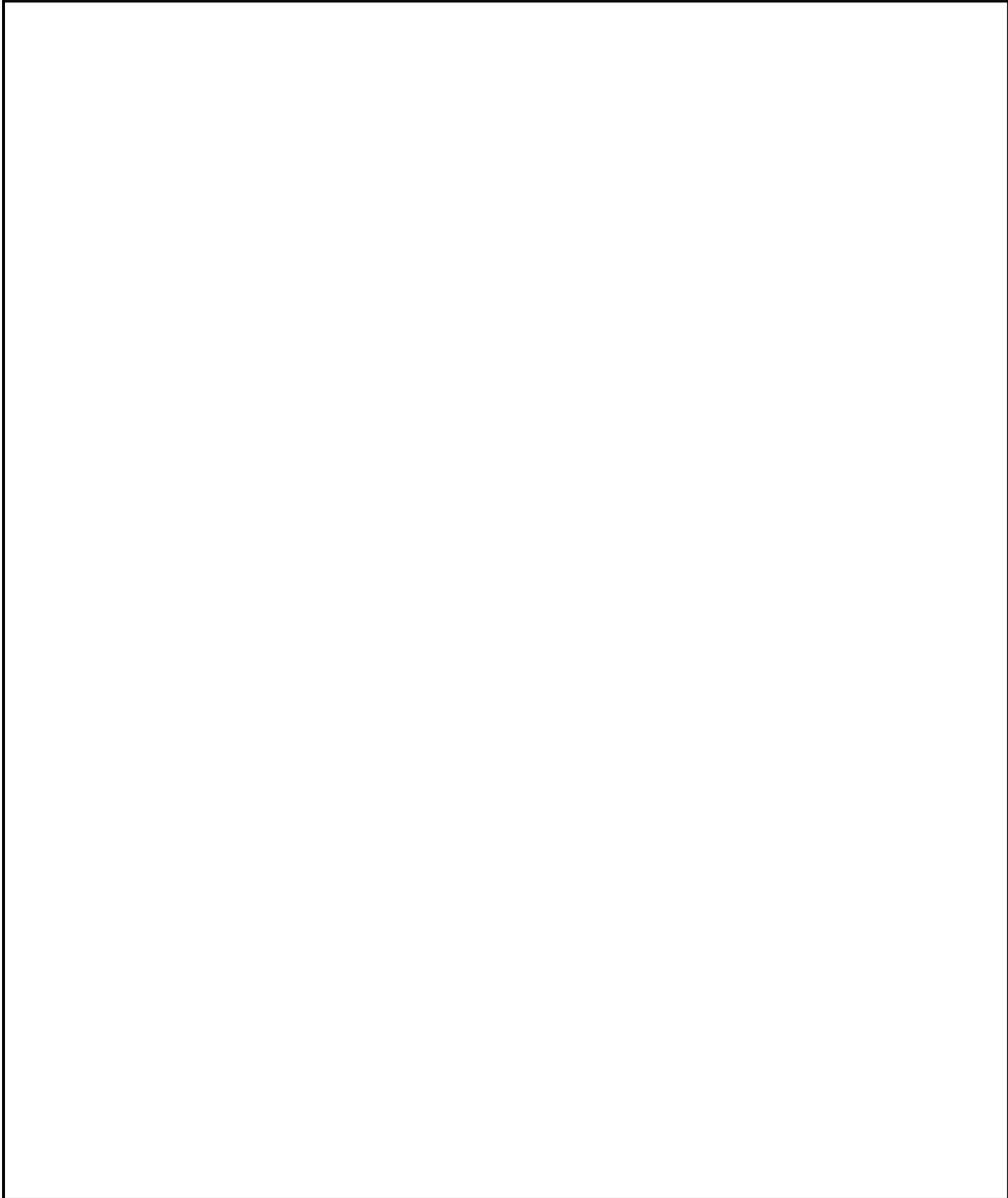
(계속)

(이어서)

항목 및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1,000)
장 6-6.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실내외에서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주위에 있는 장애 영유아 외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장 6-7.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킨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 6-8.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행하며, 차량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차량 운행 시 안전설비와 안전운행, 안전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관리와 비상 시 대처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장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우수 (3점)	<input type="checkbox"/> 종사자와 장애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한다.	
부분적우수 (2점)	<input type="checkbox"/>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거나,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미흡 (1점)	<input type="checkbox"/>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 보육시설의 특징 및 장점(/ 1,500)

○○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및 프로그램의 특징, 시설의 물리적인적 환경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 어린이집의 우수사례

우수사례		실시 여부	구체적 내용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급 교사 ()명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근무교사 ()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영 여부		신고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신고필증번호 ()
구 분	놀이시설 설치 검사 여부(40인 이상)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설치검사번호 ()
	취사부 임용 여부(39인 이하)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임용 일자 罎

※ 현장관찰 시에 보육시설의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기록 사항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설장명 : 0 0 0

■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점수 기록표

항목		점수	(최고점수)
영역 1. 보육환경	1~4. 보육시설 환경	<input type="text"/>	(12)
	5~11. 보육활동 자료	<input type="text"/>	(21)
	12~14. 보육지원 환경	<input type="text"/>	(9)
	합 계	<input type="text"/>	(42)
영역 2. 운영관리	1~4. 시설의 운영관리	<input type="text"/>	(12)
	5~7. 보육인력	<input type="text"/>	(9)
	8~11. 가족과의 협력	<input type="text"/>	(12)
	12~13. 지역사회와의 협조	<input type="text"/>	(6)
	합 계	<input type="text"/>	(39)
영역 3. 보육과정	1~7.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input type="text"/>	(21)
	8~15. 보육활동	<input type="text"/>	(24)
	합 계	<input type="text"/>	(45)
영역 4. 상호작용 과 교수법	1~3. 일상적 양육	<input type="text"/>	(9)
	4~9. 교사의 상호작용	<input type="text"/>	(18)
	10. 교수법	<input type="text"/>	(3)
	합 계	<input type="text"/>	(30)
영역 5. 건강과 영양	1~8. 청결과 위생	<input type="text"/>	(24)
	9~11. 질병관리	<input type="text"/>	(9)
	12~13. 급식과 간식	<input type="text"/>	(6)
	합 계	<input type="text"/>	(39)
영역 6. 안전	1~5. 실내외 시설의 안전	<input type="text"/>	(15)
	6~10. 장애 영유아의 안전보호	<input type="text"/>	(15)
	합 계	<input type="text"/>	(30)
전체 합계		<input type="text"/>	(225)

평가인증지표 영역별 점수프로파일(장애아전담)

문항평균							
3.0	42.0	39.0	45.0	30.0	39.0	30.0	225.0
2.9	40.6	37.7	43.5	29.0	37.7	29.0	217.5
2.8	39.2	36.4	42.0	28.0	36.4	28.0	210.0
2.7	37.8	35.1	40.5	27.0	35.1	27.0	202.5
2.6	36.4	33.8	39.0	26.0	33.8	26.0	195.0
2.5	35.0	32.5	37.5	25.0	32.5	25.0	187.5
2.4	33.6	31.2	36.0	24.0	31.2	24.0	180.0
2.3	32.2	29.9	34.5	23.0	29.9	23.0	172.5
2.2	30.8	28.6	33.0	22.0	28.6	22.0	165.0
2.1	29.4	27.3	31.5	21.0	27.3	21.0	157.5
2.0	28.0	26.0	30.0	20.0	26.0	20.0	150.0
1.9	26.6	24.7	28.5	19.0	24.7	19.0	142.5
1.8	25.2	23.4	27.0	18.0	23.4	18.0	135.0
1.7	23.8	22.1	25.5	17.0	22.1	17.0	127.5
1.6	22.4	20.8	24.0	16.0	20.8	16.0	120.0
1.5	21.0	19.5	22.5	15.0	19.5	15.0	112.5
1.4	19.6	18.2	21.0	14.0	18.2	14.0	105.0
1.3	18.2	16.9	19.5	13.0	16.9	13.0	97.5
1.2	16.8	15.6	18.0	12.0	15.6	12.0	90.0
1.1	15.4	14.3	16.5	11.0	14.3	11.0	82.5
1.0	14.0	13.0	15.0	10.0	13.0	10.0	75.0
	보육 환경	운영 관리	보육 과정	상호 작용과교 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전체

[부록 2]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연락처

〈중앙〉

센터명	홈페이지	연락처
중앙보육정보센터	central.childcare.go.kr	02)701-0431

〈광역시〉

센터명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보육정보센터	children.seoul.go.kr	02)772-9814~8
부산보육정보센터	www.bsicare.or.kr	051)866-0536~7
대구보육정보센터	www.tgcare.or.kr	053)421-2346~7
인천보육정보센터	www.icda.or.kr	032)431-4606~9
광주보육정보센터	www.kjedu.or.kr	062)350-3600~2
대전보육정보센터	www.djcare.or.kr	042)721-1256~8
울산보육정보센터	www.ueic.or.kr	052)266-4173~4

〈도〉

센터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기보육정보센터	educare.gyeonggi.go.kr	031)258-1485~6, 258-1433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www.kgbc.or.kr	031)876-5767~8
강원보육정보센터	www.gweducare.or.kr	033)244-2660, 4660, 8660
충북보육정보센터	www.cbeducare.or.kr	043)239-8777
충남보육정보센터	www.cnicare.or.kr	042)825-3473 ~4
전북보육정보센터	www.jbicare.or.kr	063)276-8080~1
전남보육정보센터	www.jncare.or.kr	061)285-5455,5456
경북보육정보센터	www.gbicare.or.kr	053)851-9939~40
경남보육정보센터	www.gneducare.or.kr	055)213-2471~4
제주보육정보센터	www.jejueducare.or.kr	064)746-2211

〈시군구〉

센터명	홈페이지	연락처
중로보육정보센터	www.jnccic.or.kr	02)399-0891
성동보육정보센터	ccic.sd.go.kr	02)499-5675~6
광진보육정보센터	www.gicare.go.kr/	02)467-1827~9
동대문보육정보센터	www.ddmccic.or.kr	02)2237-5800, 2247-843~44
종랑보육정보센터	www.jccic.or.kr	02)495-0030~1
성북보육정보센터	ijoa.gongdan.go.kr	02)918-8080~2
도봉보육정보센터	www.doccic.go.kr	02)3494-3341~2
노원보육정보센터	www.nwccic.or.kr	02)930-1944
은평보육정보센터	www.epmjuccic.co.kr	02)351-3629,3630
서대문보육정보센터	www.sdmccic.or.kr	02)3217-9550
마포보육정보센터	www.mcic.or.kr	02)308-0202
양천보육정보센터	-	02)2646-7790
구로보육정보센터	www.guroccic.or.kr	02)859-5432,2345,5678
강서보육정보센터	www.gskids.or.kr	02)2064-2730~2
금천보육정보센터	www.happycare.or.kr	02)894-2264~5
영등포보육정보센터	www.ydpccic.or.kr	02)833-6022
동작보육정보센터	www.dccic.go.kr	02)823-4567
관악보육정보센터	www.gwanak.go.kr/educare/main.html	02)851-2834~5
서초보육정보센터	youngua.seocho.go.kr	02)598-9340
강남보육정보센터	www.gncare.go.kr	02)546-1736~7
송파보육정보센터	kids.songpa.go.kr	02)449-0505 070)8281-2011
강동보육정보센터	www.gdkids.or.kr	02)486-3556
인천남구보육정보센터	www.nccic.or.kr/	032)884-0756

센터명	홈페이지	연락처
부평보육정보센터	www.jpbeducare.or.kr	032)361-8653~4
수원보육정보센터	www.swchildcare.or.kr	031)255-5682~3
성남보육정보센터	www.sneducare.or.kr	031)721-1640,1648~9
부천보육정보센터	www.bucheoni.or.kr	032)322-8686
안양보육정보센터	www.aycteducare.go.kr	031)383-5170~1
광명보육정보센터	childcare.gm.go.kr	02)899-0163~4
안산보육정보센터	www.ansanbo6.com	031)415-2271~3
평택보육정보센터	www.ptchildcare.or.kr	031)692-7705
시흥보육정보센터	www.shccic.net	031)431-6358
군포보육정보센터	www.gpccic.or.kr	031)393-0236~7
화성보육정보센터	www.hsicare.or.kr	031)8059-1640~2
이천보육정보센터	www.goodcare.or.kr	031)634-9842~3
의왕보육정보센터	www.uweducare.or.kr	031)455-1853~4
고양보육정보센터	www.echild.or.kr	031)975-3314
의정부보육정보센터	www.icare.or.kr	031)853-5006~8
강릉보육정보센터	www.kneducare.or.kr	033)641-1382, 642-1383
천안보육정보센터	www.ceic.or.kr	041)561-2821~2
포항보육정보센터	phcare.ipohang.org	054)256-2580
창원보육정보센터	ec.changwon.go.kr	055)287-1216
진주보육정보센터	www.jinjucare.or.kr	055)751-3622~4

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011년 1월 인쇄
2011년 1월 발행

발 행 인 보건복지 장관
발 행 처 보건복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사전 승인없이 지침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51000-000003-10

※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www.kcpi.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6층
한국보육진흥원
전 화 • 02)6901-0100(代) 팩 스 • 02)6901-0191